

2019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 저작권의 기초적인 상식
| 저작권 관리 담당자
| 저작권표준관리 지침
| 홈페이지 관리
| 소프트웨어 관리
| 뉴스저작물 이용
| 공공저작물 관리 방안

목 차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을 한 눈에	5
제1장	올바른 저작권 관리의 이해	7
	제1절 저작권의 이해	9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21
제2장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임명	27
	제1절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요건	28
	제2절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역할	29
	제3절 FAQ	33
제3장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의 도입	34
	제1절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안)	36
	제2절 저작권 표준 관리 해설서	41
	제3절 저작권 관리 지침 참고 자료	63
제4장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	72
	제1절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의 이해	73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	74
	제3절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87
	제4절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97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108
제5장	사후 관리	123
	제1절 문서의 관리	124
	제2절 교육	129
부 록	저작권법 및 시행령	133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을 한 눈에

- 기업·기관·단체(이하 기관)에서의 저작권 문제는 1)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어떻게 지키는가(침해 대응), 그리고 2)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침해 예방)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은 저작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저작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관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저작권 관리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관리담당자는 기관이 현재 어떠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에서는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총괄 관리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 관리담당자뿐 아니라 기관에서는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필요합니다. 저작권 관리 지침을 구비하는 것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법인이나 사업자가 저작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평가하는 검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저작권 관련 전문가에게 지침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전 직원에게 숙지하고 지침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각 기관마다 관리해야 하는 저작권의 분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에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편람 내용만 확인하시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9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에서는 1. 홈페이지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이용 시 관리해야 할 사항, 3. 뉴스저작물의 이용 시 저작권 관리 사항, 4. 공공기관이라면 지켜야 할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수록하였지만,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편람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 관리를 위해서는 저작권 관리담당자 임명, 관리 지침의 도입, 분야별 편람의 확인 등 사전 준비 이외에도, 사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서 등을 문서로 보관·관리하고, 저작권 관리담당자가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작권 관리담당자를 위한 연 4시간 이상의 저작권 관련 교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저작권 관리담당자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 약 2시간씩의 교육 정도면 보수교육 수준으로 적절할 것으로 제안 드립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기관의 저작권 관리 수준을 반드시 평가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원의 저작권OK 열린상담실은 저작권OK 지정 제도를 통해 기관의 저작권 보호 수준을 무료로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장을 통해 요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요약

순서	주제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1단계	저작권 관리담당자 임명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셨습니까?		
		자격을 갖춘 자를 저작권 관리담당자로 지정하셨습니까?		
		저작권 관리담당자는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2단계	관리 지침의 도입	기관에서 적절한 저작권 관리 지침을 도입하였습니까?		
		저작권 관리 지침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 지침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셨습니까?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계십니까?		
3단계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의 작성	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저작권 관리 편람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제4장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세요)		
		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리 편람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제4장 제3절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세요)		
		뉴스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관리 편람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기관 내에서 뉴스저작물 이용 기관은 제4장 제4절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을 확인하시고 체크하세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제4장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를 확인하시고 체크하세요)		
4단계	사후 관리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 등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작권 관리담당자는 연 4시간 이상의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까?		
5단계	평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기관의 저작권 관리 수준을 평가 받으셨습니까?		

01

제1장

올바른 저작권 관리의 이해

제1장 올바른 저작권 관리의 이해

● 기업과 기관, 단체는 왜 저작권 관리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의 콘텐츠 이용과 생산은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저작물을 종합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등 사업자들은 개별 저작물에 대하여 각각 이용 방법들을 이해하여 이용해야 하며, 자신들의 저작물까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업자들이 사업 영역과 동시에 기관 차원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업과 단체 등에서 임직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장치 마련을 지원하고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과 컨설팅 관련된 문의, 저작권OK 지정과 관련된 문의는 저작권OK 열린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
안
내

전 화 : 1588-0190
대 면 :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열린상담실
온라인 :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내 저작권 보호 상담

※ 전화 및 대면 상담 이용 시간은 근무일 기준 09시~18시이며, 대면 상담의 경우, 더욱 편리한 상담 이용과 필요 시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 상담 예약을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절 저작권의 이해

1. 저작물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물성을 가지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아이디어'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외부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창작성'을 가져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965)

- 저작물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예를 들어 글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였다면 글(어문저작물)이 저작물이 되고, 춤으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춤이 저작물이 됩니다. 따라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저작물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반면, 원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도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시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의 권리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물론 2차적저작물 중 원저작물의 권리와 별개로 보호되는 부분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본인이 창작을 한 영역에만 해당합니다.
-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 합니다. 편집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편집저작물을 만들었다면, 편집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편집의 소재가 되는 저작물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 저작자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창작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저작자의 조수, 저작물 제작의 의뢰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며,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즉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회사의 지시 하에 업무 시간에 창작한 저작물이라면, 회사의 저작물이 되고 저작권은 회사가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저작자가 누구인지 추정하는 방법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아호, 예명,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 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인 경우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그렇다면 여러 명이 참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어떨까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하고,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였는데,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 하고, 저작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소유한 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어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설정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라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1)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인 권리인 반면,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이 되는 반면,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 허락 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

- 일반적으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 또는 무형의 관념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¹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이지만, 저작자의 사후에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행사

1 · 박성호,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7년, 261면.

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공표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 하였거나 배타적으로 발행할 권리 또는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표되지 않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저작자가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 방식에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보고 있고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에도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기증과 동시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물을 이용한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그리고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그리고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범위에서 아래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경우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3)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경제적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과 같은 다수의 권리 집합²은 이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 (복제권) 복제란, 인쇄나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 (공연권)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 음악,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라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사내 방송을 한 경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이라면 공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 · 중 ·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공중송신이란, 저작물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중송신에는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중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을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일방향성, 동시성), 예를 들면 유선방송, 위성 방송, DMB가 해당합니다.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쌍방향성, 이시성). 예를 들면 벅스 뮤직과 같은 주문형 서비스, 지상파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동시성, 쌍방향성) 전송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 인터넷 방송,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을 동시에 웹캐스팅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시권) 전시란,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시권은 저작권자뿐 아니라 원본의 소유자, 그리고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로(街路)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술저작물 등이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는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가로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또한 전시를 하

2 · 박성호, 앞의 책 318면.

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고,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배포권) 배포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즉 최초의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이후 판매에 대해서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최초판매원칙에 관한 규정). 이러한 단서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의 양도나 대여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 (대여권) 대여는 배포의 한 형태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판매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저작자가 영리 목적의 대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방법은 대체로 ①번역(어문저작물), ②편곡(음악저작물), ③변형(미술저작물), ④각색 및 영상제작 그 밖의 개작(改作) 등(그 외의 나머지 2차적저작물 작성 행위)의 네 가지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³

4.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가수, 배우,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권법에 따라 일정하게 보호하고 있으며⁴, 이들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개괄

³ 박성호, 앞의 책, 379면.

⁴ 박성호, 앞의 책, 379면.

순서	주제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복제권	복제권	복제권
	공연권	공연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배포권	배포권	
	대여권	대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인접권 중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이 두 권리는 실연자의 일신에 전속됩니다. 또한 재산권으로서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가집니다.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 역시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과 전송권을 가집니다.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자신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지고,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5.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 허락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라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을 허락받아야 하며,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이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락’이란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⁵ 또한 이용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6.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제1조). 저작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작권자 등의 권리자와 이용자 상호 간에 권리와 이익을 조정하고자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를 정하기 위한 저작권의 제한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로는 가. 비보호저작물(제7조), 나. 공유(公有, public domain), 다. 넓은 의미의 저작권의 제한이 포함되며, 넓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은 다시 (1) 좁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과 (2) 비자발적 허락으로 나누어집니다.⁶

⁵ 박성호, 앞의 책, 442~443면.

⁶ 박성호, 앞의 책, 528면.

대분류	중분류	관련 조항
비보호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공유(공유, public domain)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내지는 제44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넓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	좁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	제23조~제38조(법정허락 제외,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제101조의3~제101조의5(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등)
	비자발적 허락	제25조 제4항 ⁷ , 제31조 제5항 ⁸ , 제50조 ⁹ 내지 제52조 ¹⁰

· (비보호저작물) 비보호저작물이란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아예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¹¹ 저작권법 제7조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꼽고 있습니다.

· (공유, public domain) 공유(公有)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만료(저작권법 제39조 내지 제44조), 저작재산권에 대한 상속인의 부존재나 저작재산권자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저작재산권의 소멸(제49

⁷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⁸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⁹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익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¹⁰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¹¹ 박성호, 앞의 책, 528면.

조),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이 소멸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¹²

· (넓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목적과 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용 허락은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좁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과, 반드시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허용되는 비자발적 이용 허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¹³

· (좁은 의미의 저작권 제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성’과 ‘한정성’을 요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규정은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권리 내용을 공익성 등 특별한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성’(이용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구되고, 나아가 본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은 ‘한정적’(권리 제한은 법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¹⁴ 따라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는 이용의 목적과 방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저작권 등의 집중 관리와 우리나라 신탁관리단체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이 중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저작자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경우에는 양도와 신탁, 또는 대리를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위탁관리란 저작물의 이용과 관리를 원활히 다음 위해 저작권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위탁관리는 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로 구분됩니다.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저작권신탁관리라 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대리중개라 합니다.

8. 저작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12 박성호, 앞의 책, 530면.

13 박성호, 앞의 책, 532면.

14 오승중,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545면.

· 저작물의 이용 행위는 적법한 이용 행위와 위법한 이용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용 행위는 대개 저작권 등의 이용 허락 받거나 저작권 등을 양도받는 등의 경제적 이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밖에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용의 행위도 적법한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¹⁵ 이와 반대로 이용 허락, 저작권 제한의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이용 행위는 위법한 이용에 해당합니다.

· 이외에도 저작권법 제124조에서는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으며, 4)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저작권을 위법하게 이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 및 형사 상 각각 별도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민사상 책임은 재산적/인격적 피해를 보전할 책임을 말하며, 권리자는 침해예방청구, 침해정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정지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상 책임은 법질서 위반에 따른 사회적 책임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형벌이 내려집니다.¹⁶

·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의 대부분은 권리자가 저작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상대방은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 받았거나 혹은 저작권 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민사 또는 형사적인 구제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도 저작권법에 대한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친고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¹⁷

· 저작권 등의 침해 소송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의 침해 → 저작권 등의 경제적 이용 →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순으로 관련 쟁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¹⁸

15 박성호, 앞의 책, 657면.

16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저작권 관계 자료 2016-02, 27면.

17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박성호, 앞의 책, 658면.

- 저작권의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자 하는 권리자는 1) 권리자가 저작물 등에 대해 저작권 등을 가지는지, 2) 침해자에 의한 이용 행위가 있는지, 3) 양자의 저작물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을 가집니다. 즉 권리자가 저작물 등에 대해 저작권 등을 가지는지 판단할 때에는 저작물 등이 과연 저작물성(인간에 의한 창작성과 독자성의 표현)을 가지는지, 그리고 권리 주장자가 과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¹⁹ 다만 저작물 간의 실질적 유사성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또는 기관에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감정'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구제 이외에도 행정적인 구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적인 구제는 행정부가 직접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여 이를 제재하는 직접 대응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권리자의 민·형사상 구제를 지원하는 행정의 보완적 역할 역시 행정적 구제의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환경적 지원 역시 광의적으로는 행정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좁은 의미에서의 행정적인 구제는 2016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면서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의 업무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시정권고'와 같은 행정적인 구제 활동을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적인 구제 수단은 사법적 구제 수단에 비하여 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적인 구제의 목적이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 불법복제물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¹⁹ 박성호, 앞의 책, 658면.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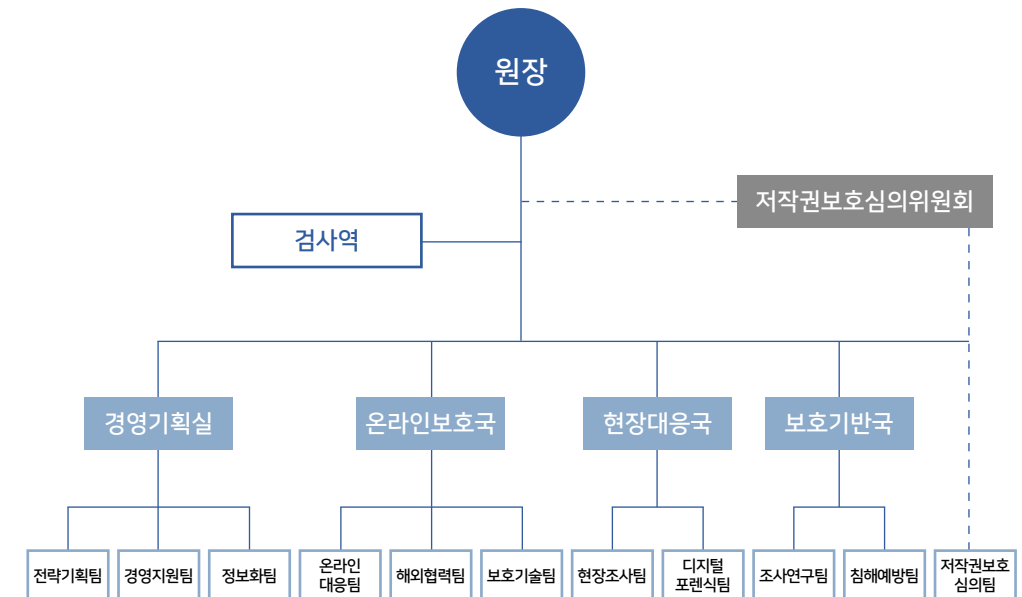
1. 설립 목적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집행 관련 사항 심의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 설립 과정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정이용진흥국)의 저작권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2016년 9월에 새롭게 출범한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 설립 근거 :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3. 조직도



4. 수행 업무

1) 저작권OK 지정

- (저작권OK 지정 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권리 관계가 확인된 콘텐츠를 판매·유통·서비스하는 업

체를 대상으로 ‘저작권OK’ 지정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작권OK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copyrightok.kr)

-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을 위한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운영) 저작권OK열린상담실에서는 권리자, 유통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에 특화된 전문 상담 및 컨설팅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88-0190,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열린상담실,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내 ‘저작권 보호 상담’ 코너)

2) 저작권 보호 문화 조성

- (저작권 침해 예방 캠페인) 저작권 보호로 문화 번영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현실입니다. 평생 학습 개념을 도입하여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 국민 체감형 저작권 보호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열린 포럼) 생활 속 저작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권리자, 유통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열린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 저작권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로 선발하여 저작권 보호 관련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3) 동향 조사

-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저작권 산업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보호 환경에 대한 지속적 조사 연구 활동과 심층 분석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 문화산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4) 온라인 모니터링

- (재택 모니터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 계층 등을 재택모니터링 근로자로 고용하여, 국내외 약 200여 개 사이트에 대한 주·야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온라인상의 침해대응 뿐만 아니라 취업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시스템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을 개발하여, 국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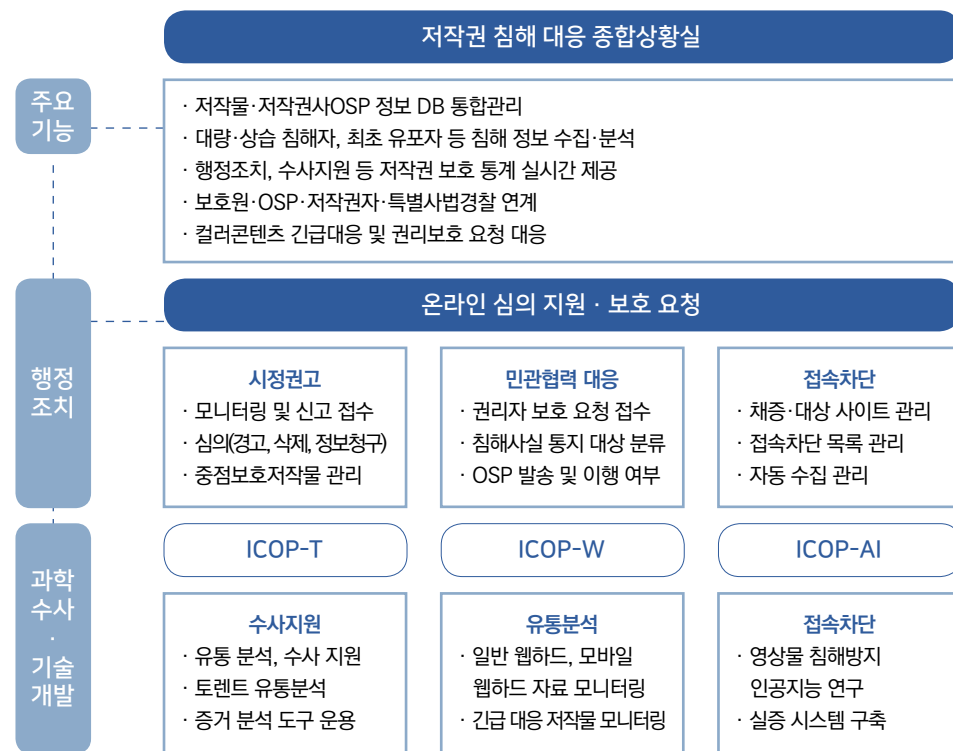
- (해외 사이트 모니터링) 35세 이하 콘텐츠 주요 소비층인 청년을 저작권 청년 재택모니터링단으로 활용하여 한류 침해 사이트의 접속차단과 수익원 근절을 위한 광고차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 유통 현황 조사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심의·행정조치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①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등의 시정권고(저작권법 제133조의3)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저작권법 제133조의2)을 위한 심의·의결을 합니다. ② 권리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기 위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저작권법 제103조의3)를 심의·의결을 합니다. ③ 또한, 국내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제44조의7)을 요청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합니다. ④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합니다.

6) 종합상황실

- (저작권 침해 상황 종합 대응체계 구축) 최근 음악, 드라마 등 킬러콘텐츠의 온·오프라인상 불법 유통이 수시로 발생하여 국내외로 수 분 내 확산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의 한계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실시간 통합하여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의 핫라인 구축을 통한 신속한 수사·단속으로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삭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및 유관 기관과 공조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와 단속 지원을 통해 대규모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업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실버감시원을 운영하여 주요 불법복제물 판매 거점을 대상으로 입체적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 SW 저작권 보호

- (불법복제SW 근절을 위한 단속·점검 등 기술 지원) SW산업은 미래로 나아가는 신(新) 성장 동력으로써, SW 산업 보호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법복제SW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SW 관리 강화 및 정품 SW 사용 문화 정착) 올바른 SW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품 SW 사용을 유도하고자 공공 분야의 SW 사용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SW 관리담당자 교육 등을 병행하여 공공 부문의 SW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9)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 수사

-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 수사) 다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검찰 및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증거자료에 대한 수집·분석 등 저작권 침해 수사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포렌식(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이란?

저작권 침해 사범의 디지털 저장 장치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분석,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에서의 변경

10) 연구·개발

-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 개발 전략 로드맵 개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 그룹 작업반을 운영하여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 개발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 과제와 방안 도출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추진)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상물 침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영상물 식별을 위한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을 구축하여 연구 실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1) 정책 연구

- (저작권 보호 체계 및 미래 정책 연구) 국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대응을 위한 절차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동향 조사와 해외 법·제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보호정책연구회 운영) 저작권 보호 관련 법·제도, 산업, 경제·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현안 논의를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기획조사·연구 수행) 저작권 침해 이슈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저작권 보호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 국제 협력

-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저작권 기술의 국제 교류의 장(場)인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ICOTEC)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노력 및 해외 각국의 정부 정책, 해외 콘텐츠 기관의 저작권 관리 등의 사례를 공유하여 저작권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ICOTEC 홈페이지 : www.icotec.or.kr)

-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여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Copyright Enforcement)을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제, 정책 및 국제 이슈와 국내의 저작권 보호 기술과 단속 기법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망 운영) 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장르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유통 현황 관리 및 삭제 요청, 경고장 발송, 후속 처리 등 신속한 침해 구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 민간기구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정보 교류를 하고, 침해대응 공조를 통해 한류콘텐츠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해외 저작권 보호 실태조사) 국가별·콘텐츠별·산업별 유통실태 진단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해외 저작권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해외 저작권 유관기관 교류·협력 체계 구축) 해외 공공기관 및 민간 권리자 단체와 연계하여 유통플랫폼에 협조요청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노하우 습득 및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한류콘텐츠 존중 인식 개선 활동 전개를 통해 건강한 콘텐츠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2

제2장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임명

제2장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임명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나요?		
02	조건을 갖춘 자를 저작권 관리 담당자로 지정하였나요?		
03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나요?		

제1절 저작권 관리 담당자²⁰의 요건

- 저작권 관리 담당자가 있으면 기관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콘텐츠의 장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관리와 함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침해로 인한 소송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기관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조직의 관리, 임직원에 대한 저작권 관련 교육, 저작권 관리의 이행 감시 등을 담당하는 저작권 관리의 핵심 주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 담당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관 내에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없다면, 담당자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저작권 강의, 보호원의 저작권OK 지정사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조직 내에서 저작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재량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인사 절차에 따라 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사실을 공지하는 등 관리 권한에 대하여 공식화하여야 합니다.

3) 필요에 따라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해당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직위를 겸임할 수 있으며, 관리해야

²⁰ 저작권관리담당자는 이대희,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118면~119면의 자율준수관리자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는 저작권이 여러 분야(부서/팀 등)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저작권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한 명이 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기관의 정보화 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나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시책 수립 부서 등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역할을 개인정보관리담당자의 지위, 홈페이지를 통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수령인의 지위,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²¹의 지위를 겸하는 등 조직 내에서 유연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절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역할

-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기관의 저작물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저작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타인의 저작물을 기관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저작권 관리 지침의 내부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저작권의 분야별로 저작권 관리의 문서를 관리합니다. 기관(조직)의 속성을 파악하여 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분야별 편람을 관리하면서 필요 시 신탁관리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 관리 담당자의 역할	
01	기관의 저작권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02	연 1회 이상 저작권 관리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03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을 관리하고, 계약서 등 저작권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04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및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관리·점검합니다.
05	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관리 편람을 작성합니다.
06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합니다.

1) 소프트웨어 기관관리책임자

· 대통령 훈령 제296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

²¹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담당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규정 제4조에서는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서관리책임자는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 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는 하지만, 일반 기관에서도 이에 착안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관리한다면 SW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공저작물의 관리자에만 한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는 저작권 관리 담당자가 공공저작물관리담당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림 1]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과 실무 담당자(관리 담당자)를 게시한 화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게시 화면〉



〈대통령경호처 효자동 사진관 홈페이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관리 실무자 게시 화면〉

[그림 1]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관 및 관리 실무자(담당자) 게시 화면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 제2항에서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담

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나열하였는데, 1. 공공저작물관련 관리·제공·이용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을 담당합니다. 공공저작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관리 및 이용 지침’의 편람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동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동조 제4항에서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저작권 관리 담당자

-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기관이 소유하는 저작물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서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기관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계약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사항(예를 들어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 제104조, 제133조의2, 제133조의3 등)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제5장 분야별 저작권 관리 지침의 도입 중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관리 담당자는 기관에서의 저작권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 허락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이 소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용역계약 등에서 저작물을 생성하거나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의무 역시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저작권관리 담당자는 기관 내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각 담당자가 스스로 역할을 강화하고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관리담당자가 외부 전문기관(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시에는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에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 저작권OK로 지정하고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OK 지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절 FAQ

Q 저작권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근거가 있나요?

A 대통령 훈령(제296호)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5-4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자와 공공저작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비록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홈페이지 운영자)는 저작권이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할 때나, 재개를 하고자 할 때 그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하여 온라인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등)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관리책임자와 공공저작물관리의 책임자, 그리고 홈페이지에서의 복제·전송의 중단 등의 요구를 받을 자들을 총칭하여 저작권 관리 담당자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기관은 저작권관리담당자에게 위에 준하여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관리담당자의 지정은 저작권을 관리하여 침해를 예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 될 수 있으며, 저작권의 침해 예방에 핵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저작권 계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저작권 계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과 진행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관기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배포되고 있는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표준 계약서 양식들은 저작권 OK 홈페이지에 게시해두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03

제3장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의 도입

제3장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의 도입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기관에서 적절한 저작권 관리 지침을 도입하셨나요?		
02	저작권 관리 지침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셨나요?		
03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 지침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셨나요?		
04	기관에서 저작권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계신가요?		

-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가이드북은 저작권 침해에서 기업이나 기관이 양벌규정에서 면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기관에게 있어 '우리의 조직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관에서 채택한 저작권 관리 지침입니다. 저작권 관리 지침에는 앞서 언급했던 관리담당자의 지정 뿐 아니라, 재산권의 권리 귀속, 저작물의 관리와 이용 등에 저작권의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은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 기관들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 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각 기업과 기관은 기관 운영 방법과 형태 등에 맞게 특성에 맞는 저작권 관리 지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도입하는 저작권 관리 지침은 기관 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가이드북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은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도모'를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표준 관리 지침은 기업이나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을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아울러 민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침의 내용은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은 크게 총칙,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관리,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침 중 파랑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공공기관에만 해당하고, 빨강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민간 기관에 해당합니다. 민간 기관과 단체에서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과 기관이 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변형하시면 됩니다. 또한 각 기업이나 기관에서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열린상

답실에서는 각 기업과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저작권 관리 지침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OOOOOO(이하 “*** (기관명)”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3.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이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란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유이용허락”이란 ***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공공기관만 적용)
6. “이용허락조건표시”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의 조건을 공고한 표시를 말한다.(민간기관만 적용)

제3조(기본원칙)

- ① ***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공기관만 적용)
- ① ***은 「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간기관 적용가능)

- ② ***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은 업무상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의 업무상저작물에 적용한다.
- ② ***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관리

제5조(저작재산권의 귀속)

***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재산권 등은 ***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귀속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

- ① ***이 제3자에게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 의뢰를 위한 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은 제1항에 따른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단독으로 보유한 저작권의 행사)

***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업무상저작물의 권리행사는 ***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공동으로 보유한 저작권의 행사)

- ① ***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② ***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9조(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등록·관리)

***은 업무상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에 업무상저작물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

***은 업무상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 업무상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업무상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장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제11조(이용허락)

- ① ***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물인 경우
- ② ***은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여 이용허락을 하거나 업무상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비독점적 이용허락)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재이용허락)

***은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자유이용허락)

***은 업무상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이용허락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나 이용허락의 범위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이용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업무상저작물)

***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 또는 제3자가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2차적저작물인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상저작물의 변형 또는 변경)

- ① ***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은 이용자의 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이용자는 저작권격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출처의 명시)

- ① ***의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재이용허락 및 제16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의 작성 시에도 이와 같다.
- ② ***의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한 자는 결과물을 공표할 경우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출처의 명시는 공공누리 이용조건(또는 이용허락조건) 및 업무상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누리의 적용)

***은 이용자가 업무상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공공기관만 적용)

제18조(이용허락조건의 적용)

***은 이용자가 업무상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이용허락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민간기관만 적용)

제19조(제공비용)

***은 자유이용 대상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이용료 징수)

***은 제18조 단서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업무상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신탁)

***은 업무상저작물을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을 제18조 단서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업무상저작물로 변경할 수 있음**)

제22조(이용허락 등의 중단)

-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 등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적용중인 이용허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6.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상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상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제23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업무상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업무상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제24조(저작물 보호요청)

- ① ***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경우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하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침해자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침해의 확산 예방을 위해 ***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업무상저작물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민간기관만 적용)**

제25조(경고장의 발송 등)

- ① ***은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 ② ***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장의 발송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알선 또는 조정)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은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2절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 해설서

-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관리 지침은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관리하고, 타기관 또는 타인을 대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허락받고자 할 때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 관리 지침은 크게 일반 기관과 공공 기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 기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으로 인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 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일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로서 기관이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총칙

- 이 장은 저작권 표준 관리 지침의 목적, 지침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기관의 업무상 저작물 등의 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타인의 이용을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 정의에서는 기관에서 특별히 추가하고자 하는 뜻을 넣을 수 있으며, 기본 원칙은 기관의 원칙에 맞게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각 조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OOOOOO(이하 “***기관명”)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A-1. 저작권 관리 지침의 목적은 ‘업무상 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지침이란 본래 회사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명시한 문서라 할 수 있으며 각 지침의 목적에 따라 항목을 달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업무 실시의 방법, 관리,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저작권 관리 지침 역시 ‘회사 내’에 한정하여,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 저작물’을 관리하는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1-A-2. 저작권 관리 지침이 너무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율할 필요는 없지만, 양별 규정을 면책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와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이 저작물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 이외에도, 침해의 대응과 보호의 요청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3.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이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재이용허락”이란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유이용허락”이란 ***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공공기관만 적용)

6. “이용허락조건표시”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의 조건을 공고한 표시를 말한다.(민간기관 적용가능)

- 2-A.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31호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서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세부 요건은 4-A.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A-1. 지침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을 크게 세 개로 구분하였는데, 가. 기관의 기획 하에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나.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저작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중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목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간기관에서 채택하는 저작권 관리 지침에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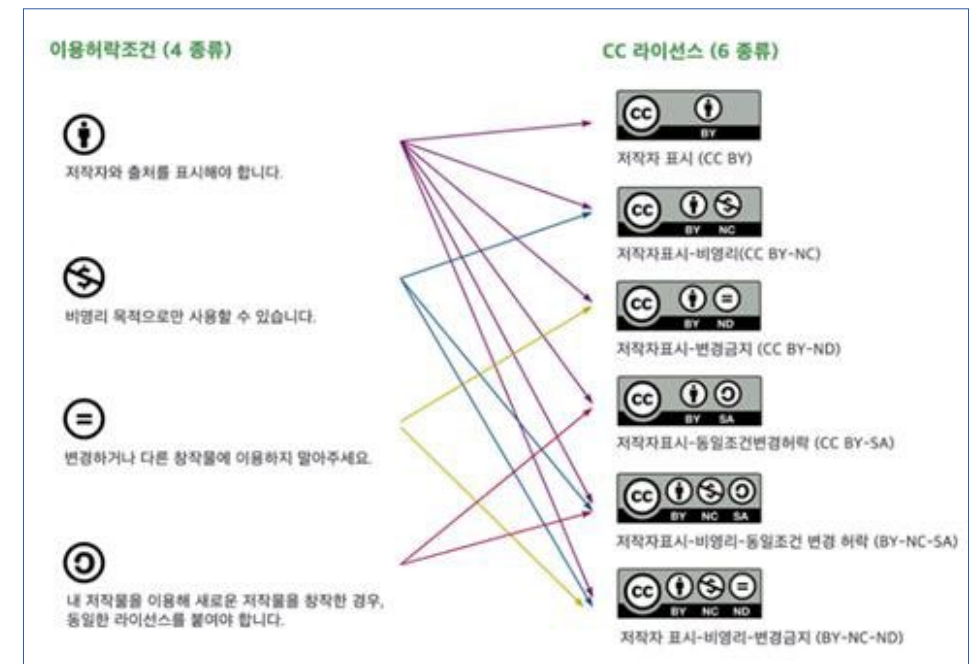
- 2-B. 저작권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지침에서도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작물’이란 일반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창작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인 바, 약간의 수정·증감이나 표현의 변경만으로는 창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²² 표현과 내용(아이디어)을 구분하여 표현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원저작물의 복제이고, 표현은 다르고 내용만 유사하면 2차적저작물이며, 표현과 내용이 함께 다를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로 되는 것입니다.²³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지만 2차적저작물의 보호가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2차적저작물의 보호로 인하여 원저작자의 권리는 조금도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가 중첩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원저작물과 이를 이

22 허희성, 앞의 책, 96면.

23 허희성 앞의 책, 164면.

용한 2차적저작물을 모두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저작자와 2차적저작물 저작자 모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2-C.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업무상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에도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지침 제12조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저작물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하게 되면,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다른 자는 해당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2-D.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재이용허락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기관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하면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침의 제13조에서는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이용의 허락만을 주고 재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주고 싶지 않다면, 기관에서는 재이용허락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재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절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 본 호와 지침 제13조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E. 저작권법에서 자유이용허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는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기관에서도 일반 국민이 이용 목적과 이용 형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호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형태를 정해놓으면, 기관의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는데 있어 침해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소송 등을 예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공누리나 이용허락 조건표시를 적용하기 위해 자유이용허락에 대한 정의만 해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F-1. ‘공공누리’ 또는 ‘이용허락조건표시’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조건과 범위를 저작물에 표기하여 둬으로써 권리의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용허락조건표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2-F-2. 이용허락조건표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CC라이선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개가 있으며, 이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종류의 CC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그림 2] CC라이선스 예시²⁴

2-F-3. 이용허락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자 표시(Attribution)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영리(Noncommercial)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공공기관만 적용)

① ***은 「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

24 출처 : <http://ccl.cckorea.org/>

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민간기관 적용가능)

· 3-A. 제3조 제1항은 기관이 소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널리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것을 민간 기관에 적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콘텐츠제작 기업과 같이 민간기관이 소유한 저작재산권의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경우라면 민간에서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민간기관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등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B. 저작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를 둔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역시 고려하고 있으므로 기관에서도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저작권자 뿐 아니라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저작권에 초점을 맞추어 기관이 지켜야 할 사안들을 안내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이외에도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관에서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③ ***은 업무상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C. 내부 지침은 법률보다 구속력이 덜하고, 기관 내에서의 지침 변경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침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 안에 수록하기 보다는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기준 수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침 제3조 제3항입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의 업무상저작물에 적용한다.

· 4-A. ²⁵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법인 등의 기획 하에’라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획이란 기도 내지 발의의 뜻으로 이해되지만 실제상 종업원이 자신의 착상(着想)으로 기획하여 상사나 사용자의 재가(裁可)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저작물의 작성 의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 등 사용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판례²⁶에서도 회사 광고의 저작물은 회사인 법인 등의 저작권(구법상 단체명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회사의 대표 등 개인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종사자란 저작물의 작성자가 법인등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노동법상 노동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없는 법인 등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위탁이나 위임에 의하여 작성시킨 것은 그 작성계약에 저작권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적인 작성자의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라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상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이며, 제품의 선전을 담당한 선전부원이 선전문을 작성하는 것도 자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가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의 본연의 의무는 대학 내에서의 강의이지 대학 밖에서의 강의나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안의 작성은 본연의 의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컨대 외국법령을 번역하거나 혹은 강연 등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가령 그 원고의 내용이 국가시책에 반하여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문책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나 원고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기관이 소유하게 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종업원이 소유한 저작권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침 내에서 명료하게 한 것이 지침 제4조 제1항입니다.

② ***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²⁵ 이하 업무상저작물의 구비 요건은 허위성 신저작권법 축소개정 上 62~63면.

²⁶ 서울지방법원, 1995.9.27. 결정, 95카합 3438호.

- 4-B. 타 법령에서의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지침이 타법령에서의 규정보다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타 법령에서의 규정을 따라야 할지, 본 지침을 따라야 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저작물의 관리와 이용, 보호에 대한 부분은 이 지침을 따르도록 함을 규정한 것이 지침 제4조 제2항입니다.

제2장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관리

- 본 장에서는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저작재산권의 귀속과 권리처리, 공동으로 보유한 저작권과 단독으로 보유한 저작권의 관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저작재산권의 귀속)

***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재산권 등은 ***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 귀속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5-A.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재산권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관에 귀속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4-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탁저작물은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의견을 상호 교환하여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저작권의 귀속도 마찬가지로, ① 창작자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위탁을 수행한 자에게 저작권을 주되, 이용 범위 내에서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도 있고,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으며, ③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공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기관이 귀속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귀속 관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6조(저작재산권 등 권리처리)

- ① ***이 제3자에게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 의뢰를 위한 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등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6-A. 지침의 제6조는 지침 제5조를 보완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처리는 계약을 통해 정리가 되지만, 귀속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귀속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야 할 것은 불분명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분쟁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 ② ***은 제1항에 의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B.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해당 직원이 퇴사하며 저작물을 외부에서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곡가를 고용하여 음악을 만들도록 하였을 때, 해당 음악의 저작권을 작곡가가 소유하는지 회사가 소유하는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추후 음악 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처리를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저작물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저작물의 귀속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이 퇴사하는 등 회사를 떠나게 되어 권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사후적으로라도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제7조(단독으로 보유한 저작권의 관리)

***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업무상저작물의 권리행사는 ***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7-A. 회사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업무상저작물의 권리 행사는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공동으로 보유한 저작권의 관리)

- ① ***과 제3자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는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은 모든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8-A-1.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1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대목입니다. 즉 얼마나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했느냐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을 얼마씩 배분하는지 특약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동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

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8-A-2.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8-A-3²⁷. 공동저작물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저작자가 하나의 불가분한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므로 각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그 저작물에 혼연 융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동저작물이라는 창작물에 화체(化體)된 2인 이상의 인격은 공동인격이라고 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있어, 전원이라 함은 사망한 저작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일신 전속성으로 저작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과의 관계에서 생존한 자들끼리 저작자 성명표시를 하여 사망한자의 저작자명을 빼버리고 생존해있는 저작자명만 표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의하여 사망한 저작자의 유족이 사망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로 주장하여 삭제된 저작자명을 부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은 신의에 반하여 공동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에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8-B.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저작자의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도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라고 한 것은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단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의’와 달리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형성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意思)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표시로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동의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²⁸.

제9조(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등록·관리)

***은 업무상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에 업무상저작물을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이용허락의 대상에서 제외

되는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9-A.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민간이나 공공에서 소프트웨어 이용의 실태 점검을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을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기 때문에 기관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3절 또는 제5장 제1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관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

***은 업무상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 업무상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업무상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10-A. 기관에서 책임있게 저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와 담당자, 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와 책임관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기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라면 홈페이지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위해 침해 수령인을 지정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제2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 제3장은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락을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허락을 할 수 있고, 계약서 내에서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허락)

① ***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하여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27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上 154~155면

28 허희성, 앞의 책 155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작물인 경우(공공기관만 적용)

- 11-A. 기관은 기관이 보유한 업무상저작물을 타인에게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허락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이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방법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용허락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지만 그 안에 제3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면, 기관이 비록 사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허락 시에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② ***은 이용허락의 범위와 조건을 정하여 이용허락을 하거나 업무상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11-B-1.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공공누리나 이용허락조건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나 이용허락조건표시를 할 때에는 이용자가 어떻게 이 저작물을 활용할 것인지, 그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의 조건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용허락표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CCL코리아 홈페이지(<http://ccl.cckorea.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B-2²⁹.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저작재산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만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이용방법이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과 같이 저작재산권의 종류로서 제16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된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른 이용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허락받은 이용의 조건이란 몇 천부의 복제라는 이용 부수, 몇 회의 방송이라는 이용횟수, 1시간의 프로그램이라는 이용 시간, 영남지역에서의 공연이라는 이용의 장소만이 아니라 문고판으로서의 출판, 카세트테이프에의 녹음과 같이 세부적인 이용형태와 저작물 이용대가의 선불조건, 우선이용권의 부여와 같은 특약조항, 기타 각종의 조건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비독점적 이용허락)

29 허희성 앞의책, 317~318면.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 12-A-1. 업무상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만약 기관에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가급적 타인에게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주기보다는 비독점적인 이용허락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을 달리하여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12-A-2³⁰. 만약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독점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독점적 이용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허락과는 달리 갑에게만 허락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채권·채무관계의 계약에 불과한 것이므로, 예컨대 저작재산권자 갑에게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하고, 그 후에 을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하였다면 갑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위반을 추궁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직접 을의 이용행위를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이 저작재산권자와 독점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을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그 계약의 내용인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갑은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을의 이용행위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저작재산권자가 을의 이용행위를 방임한다면 독점적 이용권이라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인 정지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재이용허락)

***은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정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이용허락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13-A. 이용허락과 마찬가지로 재이용허락도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등을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과 재이용허락은 구두상 이루어지기보다는 가급적 문서상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계약서의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용허락의 조건을 벗어난 이용의 경우 채권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진행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두상 체결된 계약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게 되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한 계약이 유지되는 조항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저작물의 계약 담당자는 계약 해지의 조항을 면밀히 살펴두고 필요 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서 안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자유이용허락)

***은 업무상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유이용허락에 노

30 허희성, 앞의 책, 316면.

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논문이나 글의 경우에는 그 제호와 수록된 간행물의 명칭), 발행기관(출판사 등), 판수, 발행연도(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월, 일), 해당 페이지를 밝히고 본문 속의 주나 각주 또는 후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합니다³¹. 번역 등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자신이 직접 들은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의 작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니는 특수한 성격과 제한 때문에 학술논문의 경우보다는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³².

제18조(공공누리의 적용)

***은 이용자가 업무상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공공기관만 적용)

· 18-A.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이용허락조건의 적용)

***은 이용자가 업무상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이용허락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민간기관만 적용)

· 18-B. 공공기관은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관은 이용허락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F-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용허락조건이란 '이 저작물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로 쓰고 싶다면 조건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유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는 것이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민간기관에서는 이용허락조건표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9조(제공비용)

***은 자유이용 대상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실비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19-A. 제공비용에 있어 법령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지만 민간기관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제20조(이용료 징수)

***은 제18조 단서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업무상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 20-A. 기관의 업무상저작물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고자 할 때, 콘텐츠 장르에 따라 신탁관리단체의 이용료 징수규정을 참고하시어 직접 징수하시면 됩니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1-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1조(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신탁)

***은 업무상저작물을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을 '제18조 단서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업무상저작물'로 변경할 수 있음)

· 21-A. 저작권법 제2조 26호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국내의 저작권 신탁관리 기관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1 박성호, 638면.

32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113면.

영역	단체명	집중관리분야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대표)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악출판사)의 권리	www.komca.or.kr	02-2660-0400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음악출판사의 권리	www.koscap.or.kr	02-333-8766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www.fkmp.kr	02-745-8286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www.riak.or.kr	02-3270-5900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어문, 연극, 영상, 미술, 사진 저작자의 권리	www.ekosa.org	02-508-0440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www.ktrwa.or.kr	02-782-1696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www.scenario.or.kr	02-2275-0566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어문저작물의 복사권, 전송권의 권리	www.korra.kr	02-2608-2800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www.kfpa.net	02-2267-9983
	한국영화배급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www.kmva.or.kr	02-3452-1001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방송인 등)의 권리	www.kbpa.kr	02-784-7802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자의 권리	www.kpf.or.kr	02-2001-7114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www.kcisa.kr	02-3153-2820

[표 2] 국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현황³³

제22조(이용허락 등의 중단)

-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업무상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 등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적용중인 이용허락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6. 기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2-A. 업무상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중, 이용자가 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기관은 이용자에게 이용 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또는 업무상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은 지켰으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적용중인 이용허락의 조건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물을 불법행

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라면 기관에서는 이용 허락 또는 제공 등을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용허락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민법이 정한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저작권 침해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특칙이 적용(제125조 내지 제126조)될 뿐 아니라 저작권자인 라이선서(licensor)는 이용권자인 라이선시(licensee)를 상대로 침해정지청구(제123조)를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벌(제136조 이하)도 부과됩니다. 더구나 이용권자의 허락받은 행위가 유채물의 생산인 경우에는 이용허락계약 위반의 효과가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복제물의 법적 성질도 달라집니다. 즉 이용권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이용권자가 생산한 복제물은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어디까지나 진정상품(眞正商品, genuine goods)이므로 저작권의 효력은 소진되는 반면 이용권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도 지는 경우라면 이용권자가 생산한 복제물은 부진정상품(不眞正商品)이므로 권리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용권자가 이용허락계약 위반으로 채무불이행과 저작권침해의 성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구권 경합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³⁴

- ② ***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업무상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상 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 22-B. 이 조항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공 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저작물의 제공 중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에서는 이 의무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의 제공 중단을 이용자들을 위해 공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공표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 제4장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침해를 당했을 때, 침해 대응을 함에 있어 기관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저작물의 보호 요청, 경고장의 발송, 그리고 분쟁에 대한 알선과 조정, 침해의 정지 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3조(침해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

33 문화체육관광부 「2016 저작권 백서」, 2019.01., 247면, 394면

34 박성호, 452면.

에 적합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저작권 침해의 기간
2. 침해된 업무상저작물의 가치
3. 침해의 빈도수
4. 침해된 업무상저작물의 종류
5. 침해의 목적
6.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 23-A-1.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이 침해 대응을 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각 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의 기간, 그리고 침해된 업무상저작물의 가치, 침해의 빈도수, 침해된 업무상저작물의 종류, 침해의 목적,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을 따져야 합니다.

· 23-A-2.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동조 제1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들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 제2항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들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동안 침해가 있었는지, 침해된 저작물의 가치는 얼마나 되며, 몇 번 침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침해된 저작물의 종류는 무엇이며, 침해의 목적이 무엇인지, 침해자가 받은 경제적 이익을 따지는 것은 손해배상을 책정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침해 대응 전 이 부분을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침해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을 따져야 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무지,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침해자에게 침해 사실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4조(저작물 보호요청)

① ***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경우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하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침해자에 대해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4-A. 이용허락표시는 특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업무상저작물을 공표하면서 이 저작물이 시중에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지 않

는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하는 자에게는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저작물 침해의 확산 예방을 위해 ***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업무상저작물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민간기관만 적용)

· 24-B. 만약 업무상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 불법복제물의 확산 예방이 필요하다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재택근로자들을 통해 주야간에 온라인상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어 불법복제물의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25조(경고장의 발송 등)

① ***은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 25-A.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법원을 통해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침해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경고장을 발생하여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장의 발송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25-B-1.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경고장만 발생하여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도 있지만, 경고장 발송과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 등 다양한 민사상 구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상저작물을 타인이 침해한 경우 침해자에게 경고장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관이 불법으로 이용하였다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경고장과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내에 법률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없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등이 발송되었을 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열린상담실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저작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5-B-2.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장래 그 침해행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청구권이고, 후자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청구권입니다. 금지청구 중 침

해정지 청구는 현실적인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침해예방청구나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아직 침해의 착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침해의 준비행위가 분명하여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침해정지청구 또는 예방청구는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절대권을 근거로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금지청구에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위법성으로 족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금지청구의 범위는 피고의 저작물 중에서 원고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침해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 저작물 전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25-B-3.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는 저작권 침해 회복을 위하여 각종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민사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금지청구(금지청구,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가 있고, 형사적으로 권리침해 등의 죄에 대한 처벌과 부정발행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제26조(알선 또는 조정)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은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 26-A³⁵.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은 민사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저작권 등의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의 알선과 조정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알선은 분쟁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교섭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알선위원이 교섭을 고무·촉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알선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알선이 성립하면 사법상의 효력, 즉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특별한 효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은 행정조정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등에 관한 분쟁이 소송절차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분쟁조정제도입니다.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그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며, 당사자 중의 일방이라도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을 맺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³⁵ 박성호, 743~744면.

제3절 저작권 관리 지침 참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권리주체가 된다.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 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권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대통령훈령 제296호(2012.6.14.)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의 관리”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나.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목의 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자의 업무)

- ① 기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4.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부서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2.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3.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검용 소프트웨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현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교육 수행)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04

제4장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

제4장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

제1절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의 이해

- 각 기관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각 공공기관 나름의 특성을 가지며, 설립 목적에 따라 연관되는 저작권 문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콘텐츠유통업 등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가이드북에 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북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기관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다양한 장르에서의 저작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예방 가이드북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컨설팅 가이드북의 분야별 저작권 관리 편람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해놓았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고, 면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다음으로는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조건은 음악 등 일반적인 저작물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즉, 음악의 경우 이용의 방법과 형태에 따라 얼마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권료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일정 정도의 표준화된 가이드가 존재하는 반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각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제시한 계약에 따라 이용 조건과 허락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기관의 입장에서 종업원이 컴퓨터에 설치한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뉴스저작물 역시 기업과 기관에서 그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수의 기업과 기관에서 공보 등을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혹은 보도된 뉴스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뉴스를 이용합니다. 다만 뉴스 역시 저작물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며, 뉴스 역시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뉴스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데, 뉴스사이트에서 뉴스를 제작할 때에도 저작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에, 제4절에서는 뉴스저작물 제작과 이용에 대한 편람을 구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편람에서 다른 주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입니다. 2013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항이 저작권법에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기관의 지휘 하에 작성된 저작물이라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조항을 따르는데 아무 무리가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다수의 저작물이 외주제작자에 의해 제작되거나 혹은 대학 교수 등 외부의 전문가가 연구 등을 통해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가이드북에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저작물의 관리 중 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편람을 제작하였습니다.
- 2019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양벌규정의 면책을 위하여 관리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분야별 저작권 관리 지침의 도입에서는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뉴스저작물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 물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저작권 관리의 영역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변화하는 저작물 유통 환경에 맞추어 기관에 적합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북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저작권 관리 지침 중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열린상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

1.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면책 및 의무 이행의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이 있나요?		
02	저작권 준수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의 운영 규정에 고지되어 있나요?		
03	저작권 침해물 발견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 있나요?		
04	홈페이지의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구비되어 있나요?		
05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게시하고 있나요?		
06	법원에서 요청하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나요?		
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나요?		
08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저작물이 불법으로 도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나요?		

-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저작물의 유통은 기존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기관에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공간과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의 공간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호원의 열린상담실로 요청하는 저작권의 상담 중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인터넷의 공간을 이용한 권리침해, 즉 범죄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을 직접 범죄 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활용하는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범죄입니다.³⁶
- 대다수의 기관에서 저작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문제를 겪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기관에서 실제 게시를 하지 않았지만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우, 홈페이지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간을 제공한 기관은 방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이 가지는 순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저작권 침해의 민·형사상 책임에서 '면책'이 되도록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면책을 위한 의무 조항 이외에도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 조항도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인데, 즉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형벌의 성질이 아닌 금전적인 제재로서 금전벌을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수단입니다. 이에, 실령 저작권이 침해되는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더라도 면책이 되는 방법과, 아울러 행정적으로 부과되는 의무 조항의 이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홈페이지에서의 저작권 침해 면책 가이드

1) 저작권 침해의 면책

- 저작권법 제6장,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제104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두고 온라인서비스에서 저작권(저작권접권 등을 포함하여)이 침해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02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작권법 제102조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4가지 기능에 대하여, 각 기능별 면책을 위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홈

36 김영기,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20권, 2012년, 322~323면.

페이지의 기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항	목적	구분	내용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저작권 침해의 면책	도관서비스 사업자	가.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 나.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위한 기술조치로서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음.
		캐싱서비스 사업자	가. 나. 동일 다.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 라.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의 규칙을 따름 마.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바.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하게 된 경우, 또는 법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 그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저장서비스 사업자	가, 나 동일 사.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아.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자.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정보검색 서비스 사업자	가. 나. 동일 사, 아, 자 동일

· 도관 서비스 사업자는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 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 등을 그 송신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관 서비스 사업자가 ①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않고, ② 저작물 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④ 저작물 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 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하였을 때,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았다면,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 캐싱서비스 사업자에서 캐싱이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디지털 정보를 캐시(Cache)라 불리는 저장공간에 임시적으로 저장한 후에 이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보의 원래 출처로 다시 가지 않고 임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³⁷.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싱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 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 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① 도관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② 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 등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③ 제공되는 저작물 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 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하면서, ④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가 명시한, 컴퓨터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키고, ⑤ 저작물 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⑥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았는데, 본래의 사이트에서는 그 저작물 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 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 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저장 서비스 사업자는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와 같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 기관에서 저작물(자료 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저장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많은 기관들이 이 저장 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저장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 요건은 더욱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 서비스 사업자는 ① 일단 도관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있으면서, ②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 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

37 출처 : 송영식·이상정, 「저작권법 개설」, 제8판, 세창출판사, 572면.

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고, ③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④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대비하여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보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의 검색 서비스를 뜻하는데, 이들 정보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① 도관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서, ② 저장 서비스 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 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103조에서는 복제전송의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목적	내용
저작권법 제103조	온라인저작권 침해의 면책	· 온라인서비스에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에 따라 저작권, 이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경우, ·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와,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자(게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이에 대해 복제전송자(게시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 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함.(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의 요구를 받을자(“수령인”)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

저작권법 제103조	온라인저작권 침해의 면책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수령인”을 공지하고, 위에서 언급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저작권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함. ·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	---

· 복잡하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복제·전송의 중단의 절차와 내용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일 뿐 아니라, 타 홈페이지에 기관의 저작물이 게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도 유용한 정보이오니 잘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복제·전송의 중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와 저작권OK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조치	수령인 지정 및 공지	홈페이지에 ‘내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삭제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수령인을 지정하여 공지해준다.
요구 접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 접수	저작물의 권리 주장자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으니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주세요’라는 요구를 접수한다.
처리 및 통보	복제·전송의 중단 및 통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복제·전송을 중단 조치하고, 그 내용을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게시자)에게 통보한다.
재개 접수 및 처리	게시자의 재개접수	복제전송자(게시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임을 소명하여 해당 게시물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하고, 재개 예정일에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재개한다. (단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아도 됨.)

· 저작권, 이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온라인서비스에서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 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요청한 저작물에 대하여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이를 권리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해당 저작물을 게시한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복제·전송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었다면,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과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만약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재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과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주장자'와 '복제·전송자'가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수렴하는 창구가 됩니다. 만약 이 창구가 없다면 권리주장자도, 복제·전송자도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수령인"이라고 합니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에 대한 공지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수령인을 지정(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복제·전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 다만 타법이나 지침(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등)을 통해서도 담당자나 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저작권법 상 복제·전송의 중단을 위한 '수령인 공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법무법인 등에서 내용 증명을 기업이나 단체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복제·전송의 중단을 위한 '수령인 공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할 수 있는 창구를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비하였다고 한다면, 법무법인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양벌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서 면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원과 정부의 명령

· 온라인서비스제공자(홈페이지 운영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나아가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권리주장자'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지목받는 자' 사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주장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지목받는 자'의 정보를 달라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개인의 정보를 '권리 주장자'가 요청을 한다고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러한 경우,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법령상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즉,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면,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³⁸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³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한다고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바로 정보 제공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제공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정보제공명령서와 정보제공서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별지로 정해져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 그 외에도 법원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범위는 온라인서비스사업의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이다'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저작권법 제103조의2입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38 청구할 수 있는 복제·전송자 정보의 범위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성명, 주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입니다.

39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의 명령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는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3. 해당복제·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사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이 포함된 정보제공청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4조의3서식] <신청 2011.12.2> (일쪽)

정보 제공 명령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성명(상호명) 주소 대표자명
정보제공 청구인	홈페이지 http:// 연락처
명령 내용	※ 대항일 경우 위촉 사용
불복일자	
명령 사유	해당 복제·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기타 필요사항	※ 대항일 경우 위촉 사용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담당자 정보 ① 성명 ② 소속 ③ 전화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	
※ 명령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4조의4서식] <신청 2011.12.2> (일쪽)

정보 제공서	
정보 제공 여부	☐ 명령을 받은 정보의 전부 제공 ☐ 명령을 받은 정보의 일부 제공 ☐ 명령을 받은 정보의 전부 제공 불가
복제·전송자의 정보 ※ 대항일 경우 위촉 사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공분 또는 합인)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대항일 경우 위촉 사용
「저작권법」 제10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 제공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정보제공명령서

정보제공서

[그림 3] 정보제공명령서 및 정보제공서

명령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령한다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행을 해야 합니다.

조항	목적	구분	내용
저작권법 제103조의2	법원이 원고(또는 고소인)의 신청으로 담보의 제공(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게),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나 침해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때 명령의 범위	도관서비스사업자	가. 특정 계정의 해지 나.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캐싱서비스사업자	가. 불법복제물의 삭제 나.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저장서비스사업자	다. 특정 계정의 해지
		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	라.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3)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정지 조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시정조치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정조치 권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시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가 전송되는 경우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앞의 권고는 불이행한다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에는 저작권법 제14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하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행정벌은 동일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고,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은 포함)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때 1. 복제·전송자의 계정, 2.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기간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명령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게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를 명하려면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법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게시판의 정지를 명령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데, 명령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판의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복제·전송자 계정의 정지, 게시판의 정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령에 대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그리고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는 사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부터 6항까지 그리고 제27조를 의견 제출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에 대한 행정절차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저작권법 제102조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구분하였습지만,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정의하여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앞에서의 일반적인 의무 이외에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0006호에 따르면,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거나(예시: 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은 제공하고 다운로드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이거나(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지급, 공간 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예시: 저작물 등을 이용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 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예시: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 게재, 타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이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란 1.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말합니다.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청서에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물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FAQ

Q 혹시라도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발견되었을 때, 저작권 면책 규정을 지키면 무조건 면책이 되는 건가요?

A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관이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책의 요건을 갖추어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법원에서는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저작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면책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당사자를 지정하는 것은 고소를 제기하는 측에서 정할 수 있을 텐데, 설령 저작권이 침해된 홈페이지의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은 할 수 있을 테지만, 법원에서는 기관, 즉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유형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열린상담실로 문의를 주시면, 기관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안내해드리고, 면책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상담 사례

Q 비영리 공공기관에서 한류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포스터와 이미지를 SNS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수준이라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인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의 인용이라 하더라도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수 있으며, 또한 이용의 목적이 창조적이거나 생산적이지 않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 설명한 바 있습니다(102~103면). 따라서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수준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권리주장자가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수령인)를 홈페이지에 마련해두시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제3절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⁴⁰

1.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SW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부서 및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셨나요?		
02	[SW 관리]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03	[SW 관리] 소프트웨어를 일괄 보관 및 버전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04	[SW 관리] 부서·직원·PC 별 사용가능 소프트웨어 목록을 작성하셨나요?		
05	[SW 점검]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시나요?		
06	[SW 점검] 소프트웨어 점검 후 보유 라이선스와 비교·확인 하시나요?		
07	[SW 점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발견 시 즉시 삭제조치가 하시나요?		
08	[SW 점검] 점검결과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하시나요?		
09	[교육 및 정책] 직원들에게 적절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셨나요?		
10	[교육 및 정책] 전 직원 대상 저작권 관련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나요?		
11	[교육 및 정책] 소프트웨어의 개인적 설치를 금하는 내규가 존재 하나요?		
12	[교육 및 정책]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 하셨나요?		
13	[SW 구매·보급]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은 편성 하시나요?		
14	[SW 구매·보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시나요?		
15	[SW 구매·보급] 업무 분석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16	[SW 구매·보급]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40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소프트웨어보호파트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2.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1) 소프트웨어 관리의 정의

-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배포되고 사용, 폐기되는 순환 사이클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행위를 소프트웨어 관리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절차 등 조직 구성원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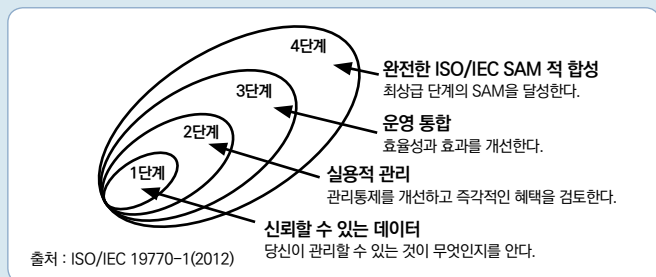
2) 소프트웨어 관리의 목적

- 소프트웨어 관리는 조직적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를 수립을 통해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그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소프트웨어 공정이용문화 정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 소프트웨어는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이에 대한 관리는 전반적인 IT관리 전략의 한 부분으로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많은 기업·기관에서 불법적인 사용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로 이는 상당히 큰 법률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리는 불필요한 라이선스의 제거로 관련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Software Asset Management)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19770-1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영역을 IT 서비스관리(ITSAM, IT Service Management) 국제표준인 SO/IEC 20000 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2006년에 발표되었다. 이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수준을 계층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ISO/IEC 19770-1:2012로 업데이트 되었다. 4개의 계층을 살펴보면, 제1계층은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가 모아진 수준, 제2계층은 실제적인 관리가 행해져 직접적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수준, 제3계층은 효율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상태로 운영이 통합된 수준, 제4계층은 모든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가 달성되는 수준을 말하고 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자산 : 국제표준인 ISO/IEC 19770-1 용어 정의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자산이란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 관리의 기대효과

가. 비용절감

(1) 필요 및 불필요 소프트웨어의 구별

- 철저한 업무 분석을 통해 필요 소프트웨어와 불필요 소프트웨어의 판단과 적정수량을 파악하여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선택하고 구입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활용이 적은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줄어들게 되어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보관·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라이선스(License)의 선택·활용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각자의 라이선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들의 라이선스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는 라이선스를 선택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구입 및 기타 부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애플리케이션 간 호환성 등의 이유로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인 이용 상황을 평소에 파악해두면 시스템 장애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며 무분별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차단하여 인트라넷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트로이 및 기타 악성코드 등의 침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법률적 리스크 감소 및 경제 발전에 기여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관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개발의욕 감소로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 지속적인 소프트웨어관리는 불법복제 방지를 통해 경제적,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게 되며, 개발자의 개발의욕을 증가시켜 관련 산업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

-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는 사후 관리로만 생각하나,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의 범위는 구매를 포함한 전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는 구매를 위한 계획 수립부터 유지, 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업·기관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므로 관리의 대상이며 취득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1단계 - 기반 구축

-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관리의 중요성을 임직원에게 인지시

키고 소프트웨어 관리의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합니다.

① 소프트웨어 관리의 중요성 인지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관리에 의한 기대효과를 인지합니다.
② 소프트웨어 관리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소프트웨어 관리를 전담할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 직원을 '관리담당자'로 지정합니다. 기관규모가 크거나 타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서별 1인을 '부서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③ 소프트웨어 관리의 제안 및 경영진 동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기관의 경영진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인지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협조를 끌어냅니다. 여기에는 경영진의 지원을 기반으로 필요 자원과 예산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④ 기관 내 모든 컴퓨터에 관리번호 부여	소프트웨어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 내의 모든 컴퓨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향후 관리의 용이성을 도모합니다.
⑤ 소프트웨어 관련자료 일체 담당부서로 이관	부서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일체를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향후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나. 2단계 - 정책과 절차 수립

-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단계로 우선 전체 소프트웨어 관리 라이프 사이클을 수립하고 세어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정책, 포상과 징계절차,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정책보급과 이를 재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표명입니다.

① 관리 라이프사이클 정책수립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취득, 인도, 설치, 이동과 통제, 폐기 등을 위한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소프트웨어 사용권의 모든 증거를 보유, 기록, 저장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② 경영진의 의지 표명	문서화된 정책과 절차를 경영자 및 이에 준하는 조직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이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③ 프리/세어웨어 등의 사용정책 수립	프리웨어와 세어웨어, 게임, 인터넷, 이메일 등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사용 정책을 수립합니다.
④ 포상과 징계절차 수립	정책 준수자에게는 포상을, 위반자에게는 명확한 징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⑤ 정책보급 및 재검토와 평가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관리정책을 수락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정책과 절차를 평가하고 재검토합니다.
------------------	--

다. 3단계 조사·분석

-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의 단계로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조사하여 관리 상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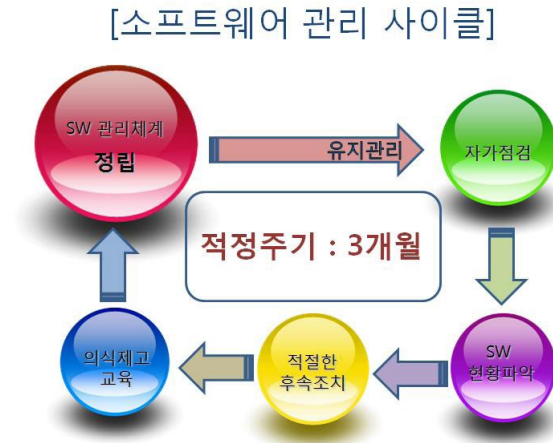
①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조사	관리담당자 등이 기관 내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조사합니다. * 각 부서의 부서관리자가 부서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과 라이선스 비교	소프트웨어의 설치 현황과 현재 보유중인 라이선스를 대조하여 정품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본 CD 및 박스, 라이선스 계약서 등 정품확인이 가능한 매체가 필요합니다.(이 책자에서는 이러한 매체를 통칭하여 라이선스라 합니다.)
③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분석	각 PC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여부 등을 판별합니다.

라. 4단계 - 보완·정비

-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보완조치를 취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단계로 소프트웨어 점검에 따라 파악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기반을 조성합니다.

①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등 보완조치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는 완벽하게 삭제합니다.
②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수요조사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와 그 수량을 파악하여 구매 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③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매	소프트웨어 수요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합니다.
④ 소프트웨어 보유대장의 작성	소프트웨어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보유대장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에 비치합니다.
⑤ 정책보급 및 재검토와 평가	불법 소프트웨어의 삭제가 완료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전부 구매되면 설치 현황표[개인별·소프트웨어별]를 작성하여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부서에 비치합니다

마. 지속적 관리 사이클 운영



3. FAQ

Q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저작권법 제141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인 법인에게 관리책임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대표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조의 단서로써“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증명을 하는 경우 법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담 사례

Q 지급한 소프트웨어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경고를 하는데도 몇몇 직원들이 본인 마음대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 없나요?

A 많은 기관들에서 직원 상호간의 정에 이끌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적발되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임의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지침 등 내규를 마련하시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 경고, 문책 등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명문화하시기 바랍니다. 너무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법복제 적발 시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 개인별 서약서를 징구하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즉각 삭제 조치한다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간 SW관리컨설팅을 진행해 드린 기업·기관 중 많은 곳에서 규정을 제정하고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강력한 관리 조치를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없어졌다는 보고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Q 폰트도 소프트웨어로 저작권보호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폰트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먼저, 본 의견은 귀하께서 제공하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간의 상담과 기존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 및 관점 등에 따라 법률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폰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폰트(font)는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종류와 크기가 동일한 활자의 세트를 뜻합니다. 또한 글자체, 폰트, 글꼴, 타이프페이스(typeface)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 본 답변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폰트로 지정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저작권법에서는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살펴본 바, “폰트는 문자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을 위한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서울고등법원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 폰트의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반면, 폰트와 구별되어 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인 폰트 파일의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속합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판결)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호, 제16호>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폰트의 저작물성과는 별도로 폰트파일의 라이선스를 위반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라이선스는 크게 기본사용 범위와 별도 계약이 필요한 사용 범위로 구분되며, 별도 계약이 필요한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폰트를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 명시된 이용허락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허락범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사에 문의하시어 이용을 해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즉 폰트 라이선스의 허용범위를 확인하시어 이용허락범위 초과 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용 도	세부내용
CI/BI	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이러닝	온라인 동영상 강좌, 플래쉬 강좌
E-BOOK	오프라인 도서, 잡지, 신문, 만화책 등 PDF/JPG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 E-카달로그 사용
영상	영화, 영화예고편, 동영상, 애니메이션, CF, DVD, 동영상으로 사용하거나 게임 채팅 및 UI제작, 각종 게임기 다비이스 내 탑재 사용
게임	온라인, 패키지, 콘솔, 아케이드, 웹게임 UI디자인
임베딩	모바일기기, 셋탑박스, 네비게이션 및 하이패스 기기, ATM기기 및 자동화시스템 웹서버 및 프로그램에서 서체파일을 직접 탑재하여 서비스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저작권OK 홈페이지(www.copyrightok.kr) 나눔콘텐츠 자료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적법한 절차로 폰트를 이용하시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관 리 담 당 자	관 리 책 임 자
(인)	(인)

순번	소프트웨어명 ①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②	PC고유번호	이용자	설치일	서명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
11						(인)
12						(인)
13						(인)
14						(인)
15						(인)
16						(인)
17						(인)

①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재

② 자산관리시스템 및 대장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

제4절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⁴¹

1.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뉴스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02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 뉴스 기사를 이용 하나요?		
03	언론사 또는 신탁관리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구매) 했나요?		
04	허락된 범위 내에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나요?		
05	뉴스기사 링크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표 3] 뉴스저작물 이용시 확인 절차

41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2.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을 위한 가이드

1) 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

-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에 따르면 신문, 인터넷 신문의 기사(텍스트)는 어문저작물이며 보도사진은 사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방송사에서 제작, 보도한 영상은 영상저작물이며 방송기자의 보도(대본)는 어문저작물입니다.

구 분	상세설명
어문저작물	신문·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 저작물
사진저작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음악저작물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영상저작물	방송·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

[표 4] 뉴스저작물의 종류

-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창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뉴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 복제, 수정, 재배포가 손쉬워지면서 뉴스의 저작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는 물론 가짜뉴스 확산 등 언론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뉴스 기사 이용하려면 언론사 허락 있어야

- 뉴스를 무단으로 복사하거나 게시,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뉴스 기사는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언론사(법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정의)

- 기자로부터 기사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인터뷰를 했거나 취재원으로서 기사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는 보도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취재기자로부터 구두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로부터 받은 허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언론사로부터 서면 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4]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 뉴스 게시판 형태로 무단전재

- 뉴스를 허락없이 이용해도 출처만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게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에 참고문헌을 적거나 언론보도에서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할 때 쓰는 출처표시에 익숙해져 생긴 오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조항은 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때 이용자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을 허락없이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시행령: 부칙참조(제11110호)]]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탁관리기관



[그림 5]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역할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그런데 이용자가 이용하려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권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자들을 위해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고 하는데 뉴스 저작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일한 신탁관리기관으로서 뉴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맺고 유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구분	매체명	매체수
신문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지역종합일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신문,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건설경제
	스포츠 일간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일간스포츠
	영자일간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전문일간·어린이신문	디지털타임스,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전자신문, 환경일보
	종합·전문주간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일요신문, 중앙선데이, 주간한국
	지역주간	당진시대, 옥천신문, 홍성신문, 광양신문, 김포신문, 뉴스서천, 영암우리신문, 영주시민신문, 원주투데이, 주간고양신문, 주간설악신문, 평택시민신문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뉴스핌, 대덕넷, BreakNews, EBN산업뉴스, PD저널, 데일리안
방송사		KBS, MBC, SBS, YTN, OBS
계		

※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않은 언론사의 뉴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표 5] 뉴스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언론사 현황 (2019년 12월말 현재)

4)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 스크랩(PDF) 이용
- 내부전산망, 홈페이지, SNS 등 게시
- 모바일, 이메일 전송
- 인쇄, 출판물에 이용

- 사진 및 뉴스 동영상 게시
- 기사 텍스트(데이터) 활용

구분	명칭	상세설명
스크랩상품	내부 라이선스	이용자가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접속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뉴스를 복제·전송·배포 할 수 있는 상품. 이용자의 사업 및 업무에 연관성과 연관성 있는 뉴스에 한함
	통합 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에 더해 홈페이지 게시, 대외발송 등 뉴스를 외부로 복제·전송·배포 할 수 있는 상품
	라이선스 플러스	내부·통합라이선스 상품에 스크랩대행 영역이 추가된 상품
제공 서비스	전자 스크랩	사용자가 전용프로그램(아이서퍼/스크랩마스터)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 스크랩하고 출력할 수 있음
	내부 전산망	뉴스 스크랩이나 기사 원문을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용
	모바일	내부전산망에 게재된 뉴스를 소속 직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	기관(기업 또는 단체)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에 관련 뉴스를 게재할 수 있음. 단, 이용 계약 시 URL 또는 계정을 지정해야 함
	대외발송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뉴스를 전송·배포 할 수 있음
	스크랩 대행	사용자가 라이선스 상품을 구매한 후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하도록 대행사에 의뢰

[표 6]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스크랩 상품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양한 뉴스이용 상품을 구성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방법과 조건에 맞추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와 방법에 따라 가격을 차등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약을 맺고 구매했거나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림 6] 뉴스저작물 이용 도식(이미지는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5) 뉴스저작권은 왜 보호되어야 할까요

-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나 뉴스를 접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뉴스는 기자의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힘들게 만든 뉴스가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값에 이용되어야 언론사는 양질의 뉴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로 기사를 보고 SNS를 이용해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복사-붙이기는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무분별한 뉴스 복제는 어뷰징 등 저작권 침해와 가짜뉴스 범람이라는 저널리즘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뉴스 생산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뉴스를 저작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건전한 뉴스 생태계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6)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뉴스저작물

- 뉴스 기사 중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인 뉴스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남은 권리에만 적용되고 이미 만료된 권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1963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50년)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옛날 신문 기사를 이용할 때에는 196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발령, 부고, 기상정보 등은 물론 경제 동향, 사건사고, 재판 상황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일 경우 기자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들이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단순한 사실 전달의 수준을 넘어선 기사'를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고, 기사 속에 기자의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체나 기관에서 제품 또는 사업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거의 그대로 기사로 기사화 되었다면 이를 제공한 이용자는 해당 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편집, 재구성하여 기사가 기사를 작성했다면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7) 뉴스 링크이용에 관한 사항

- 기사의 URL을 링크해 SNS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링크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언론사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링크하는 단순링크는 물론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직접링크 (딥링크) 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명과 기사 제목, 기사의 일부분을 쓰고 링크를 거는 방식도 흔히 사용되는데 기사의 첫 한 두 줄 정도라면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 직접링크는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이용해 영리를 취하고 언론사에 손실을 입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음악 저작물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 RSS (Rich Site Summary) 등을 이용해 뉴스를 이용하거나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링크방식	예시
단순링크 (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 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 합법	
직접링크 (Deep Link)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 합법	
프레임링크 (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 불법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시 포함)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 불법	

[표 7] 사이트 링크 방식과 합법 여부

3. FAQ

Q 기사를 편집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출처를 표시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물론 목적에 맞게 편집해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에 따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출처 표시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우리 회사 관련 뉴스를 사내 게시판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이용자가 관련된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게시하려면 사전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기사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대표나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도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발언한 부분만 인용하는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사를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뉴스 기사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하면 공익 목적이라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공익 목적, 비영리 목적이라는 요건만으로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번역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기사를 요약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제목과 링크를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A 기사 제목과 그 기사가 있는 언론사의 홈페이지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기사 제목과 함께 언론사명, 발행일자, 기사의 첫 한 두 줄 정도를 함께 보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사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모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한다면 이는 언론사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방송사 뉴스 영상을 캡처해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등 모든 콘텐츠는 뉴스 저작물입니다. 방송 뉴스 캡처 화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및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4. 상담 사례

Q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甲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겨서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

A 판례는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된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간 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이 옮긴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사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정도라면 甲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제5절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⁴²

1.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공공저작물의 취득] 제3자(일반적으로 수행사)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용역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였다.		
02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변경시 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운영기관)에 통보 하였다.		
03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 가입하여 공공기관 직원에게만 부여 되는 관리권한을 부여 받았다.		
04	[공공저작물의 관리] 홈페이지에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05	[공공저작물의 관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06	[공공저작물의 관리] 공공저작물 관리 중 애로사항 발생시 개방지원 센터(1670-0052)를 활용하고 있다.		
07	[공공저작물의 제공] 공공기관 등이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다.		
08	[공공저작물의 제공] 책자 형태로 발간된 연구보고서 등에 공공누리를 적용하고 있다.		
09	[공공저작물의 제공] 우리기관 제3자에게 공공저작물의 독점적 이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없다.		
10	[공공저작물의 제공] 저작물의 특성 및 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이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을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여 저작권 사용료 징수후 제공하고 있다.		
11	[공공저작물의 이용] 우리 기관의 저작물을 국민이 이용시 출처표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12	[공공저작물의 이용]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다.		

42 공공기관의 경정저작물 관리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에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2.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

1) 개요

· 2014년 7월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되면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절차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작물의 생산단계부터 이용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저작물의 관리 업무는 ①취득→②관리→③제공→④이용의 4단계로 구분하여 처리가 필요하며, 담당자는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래 제시된 가이드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24조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단계별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

공공저작물의 취득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만 취득하는 경우로 구분
↓	
공공저작물의 관리	담당자의 지정 및 공공누리 사이트 가입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경 저작권 정보 구축 및 보존 공공누리의 적용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활용
↓	
공공저작물의 제공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오프라인 인쇄 및 출판물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관리 사이트를 통한 유료 제공
↓	
공공저작물의 이용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제공 및 제공 중단

[표 8] 공공저작물 관리 순서도

가. 공공저작물의 취득

가)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이하 '업무상 저작물')이나 위탁용역 계약 시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저작물의 경우가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은 공무원(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업무를 하며 자연스레 생산된 저작물을 말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소속된 기관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외 위탁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포함되는 저작권재산권 관련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더불어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 단계에서 특약 조건으로 명시될 때 비로소 양도되며, 특약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특약 예시) "수행사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기관에 양도한다"

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만 취득하는 경우

- 일부만 취득하는 경우란, 위탁용역 계약 시 저작권재산권을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발주기관이 국민에 공공저작물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행사에 별도의 공공저작물 제공에 대한 동의를 확보 시 공공누리 적용 및 국민 제공이 가능합니다.

나. 공공저작물의 관리

가) 담당자의 지정 및 공공누리 사이트 가입

-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총괄하는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규모 또는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예:연구보고서 관리담당자, 사진저작물 관리담당자) 담당자 지정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의 직책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용자가 공공저작물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직제변경,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담당자 정보를 변경하고 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운영기관)으로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는 공공누리 사이트 회원가입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 중인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에서 검색될 수 있도록 웹크롤링 수집 신청을 하거나 1:1 비공개 상담, 공공누리 사이트에 연결된 소속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이용조건별로 상세열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림 7] 공공누리 사이트(www.kogal.or.kr)

나)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의 변경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법제화 되기 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게시된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하는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이하 ‘저작권 정책’)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저작권법 제24조의2 시행이후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저작권 정책으로 변경 게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는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를 점검하여 변경된 저작권 정책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이 안 되어 있다면 지체 없이 변경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가 저작권자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성 명) (연락처)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성 명) (연락처)

다)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위탁용역사업의 경우 저작권자의 일부가 수행사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예시와 같이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 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저작권자산권 관리 목록 예시

관리 번호	담당자	계약명	저작물 유형	계약 연도	제목	저작권 권리 정보	미확보 저작권자 정보	공공누리 표시	사유

※ 관리 목록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 공공기관 저작권자산권 관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6장 제1절 문서의 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관리되는 저작권정보는 저작권자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 저작권 침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자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권자는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라) 공공누리의 적용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서 국민이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라이선스(KOGL)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업무상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해 저작권자를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용역에 따라 생산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확보 정도에 따라 1~4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적용 방법 관련 문의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림 8] 공공누리 유형별 심벌마크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 공공누리 적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1항 각 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인력으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권리확인, 용역계약서 검토, 저작권 상담, 임직원 교육 등의 서비스가 무상 지원됩니다.



통합상담번호 : 국번없이 1670-0052

인터넷상담 : 공공누리 사이트내 Q/A 게시판 활용

내방상담 : 통합상담번호로 사전 예약 후 진행

(센터위치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8층 한국문화정보원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다. 공공저작물의 제공

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 취득한 공공저작물은 홈페이지를 게시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게시되는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라이선스는 저작물 1건당 1개의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저작물 공공누리 적용방법

HTML 공통태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 공공누리 1유형 HTML 공통태그 (2~4유형 태그는 공공누리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

```
<!--1유형 --><div style='position: relative;'><div style='position: absolute;'>
<a href='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1.do' target='_blank'><img alt=
'제1유형'src='http://www.kog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new_img_opentype01.
png' /></a></div><div style='padding-left:195px;'>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a href='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1.do' target='_blank'>제1유형:출처표시</a> 조건에 따라 이
용 할 수 있습니다.</div></div><!--1유형 -->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활용

- 공공누리 유형 선택화면이 제공되는 javascript 기반 스크립트로 공공누리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홈페이지에 적용 활용

공공저작물이 서비스 되는 웹페이지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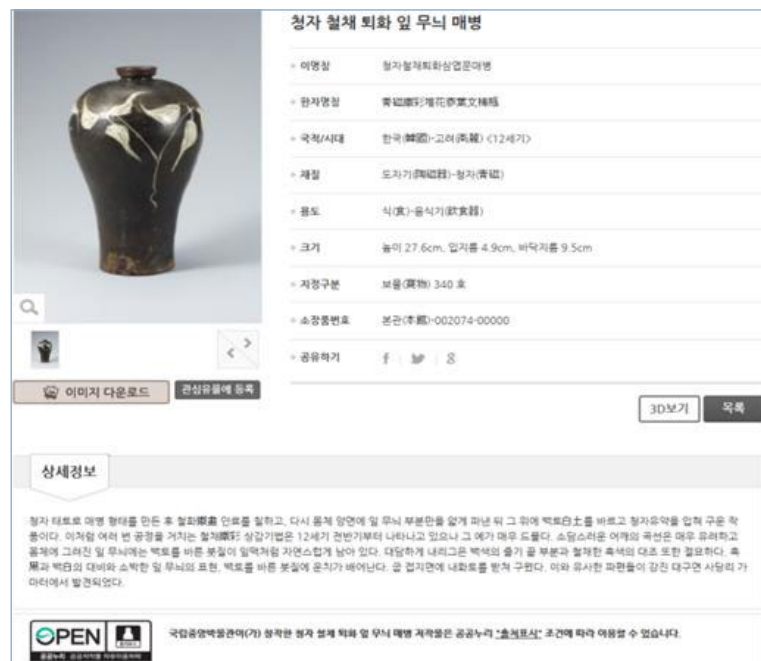
- (공공누리 표시 다운로드)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 유형안내)에서 다운로드

- (부착 방법) 홈페이지 게시물 중 공공저작물별로 하단에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

※ 위 가이드를 준용하되, 마크 위치 및 설명 문구는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



[그림 9] 홈페이지 게시물 공공누리 적용 사례 (인천광역시청)



[그림 10] 홈페이지 게시물 공공누리 적용 사례 (국립중앙박물관)

나) 오프라인 인쇄 및 출판을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 취득한 공공저작물을 배포용으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공공누리 라이선스 부착하여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자 형태 저작물 공공누리 적용방법

오프라인 책자 형태(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 공공누리 마크 다운로드 :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 공공누리 유형은 간행물의 우측 상단에 표기
- 간행물의 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배정
- 간행물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누리 유형별 표준화된 크기 적용

※ 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책자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크기, 위치 조정 가능



[그림 11] 오프라인 책자 형태 공공누리 적용 예시

- 다만, 오프라인 책자 형태 공공저작물을 출판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에 특정 출판사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공공저작물 이용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상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상 출판 및 발행 관련 규정

고시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관리 사이트를 통한 유료 제공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과 같이 법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 수치자 보전기관과 같이 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이 필요한 경우 등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저작권(이하 '공공저작권') 신��관리를 통해 유료 저작물로 국민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공저작권 신��관리단체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저작권 신�� 시 이용허락 업무의 대행,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을 대행합니다. 신��관리 사이트로 올라이트(www.alright.or.kr)가 있으며, 올라이트를 통해 신��된 공공저작물의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고시)상 이용료 징수 관련 규정

고시 제13조(이용료 징수)

제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 공공저작권 신��관리 사이트 : 올라이트(www.alright.or.kr)
- 신��관리 가능 여부 문의 : 02-3153-2873
- 주요 신�� 공공저작물 : 서울시청(미술저작물), 문화재청(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SW 저작물) 등

라. 공공저작물의 이용

- 공공누리 라이선스가 적용된 공공저작물 이용 시 이용자는 공공누리 라이선스별 이용조건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라이선스 이용조건에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가 있지만, 출처표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이용자의 기본의무입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온라인에서 이용 시)에는 해당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른 출처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표시가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변경 이용 시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공공누리의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 시에는 공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공공저작물 이용 조건을 준수 또는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의 제공 중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준수 요청 또는 이용중단 요청 사유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3. FAQ

Q 공공저작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A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체부 고시 제2015-43호)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마다 공공누리 부착이 원칙입니다. 먼저 앞으로 생성될 저작물부터 공공누리 적용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권리확인을 통해 기존에 생산되었던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공공기관의 로고, 상징(CI, MI 등)도 제공 대상인가요?

A 기관 로고의 경우에는 기관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로고를 임의로 이용하게 된다면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로고, 상징에 관한 웹페이지는 공공누리 미적용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공모전으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우리 기관에 있는 건가요?

A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공모전으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원창작자(출품자)에게 있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로 제공 또는 기관 홍보를 위해 출품작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Q 공공누리 제 2, 4유형의 상업적 활용 금지 조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이 금전적 이익을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업적 활동에는 무가치신문을 통한 광고, 블로그를 통한 기관 홍보 등 간접적인 수익 활동도 포함됩니다.

Q 공공누리 제 1, 2유형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변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일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용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우리 박물관에서 유명 작가의 미술저작물을 기증 받았는데, 그렇다면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 기관에 있나요?

A 미술저작물을 기증받을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작품 소유권만 양도된 것으로 해석되어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는 무엇인가요?

A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의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저작물의 제공은 무료제공

이 원칙이나 일부 공공저작물의 경우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예:국유재산, 공유재산, 수지차 보전기관 등) 이런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후 직접 징수하거나 공공저작권 신탁관리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저작권을 신탁하여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탁관리제도 문의처 : ☎02-3153-2873)

4. 상담 사례

Q 외부 사진작가에게 의뢰하여 고궁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미 각 궁에 배포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 양도는 받지 않습니다. 활용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촬영 의뢰 시 작성한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궁에 배포하고 궁 관리사무소에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과업(또는 계약서)에 포함된다면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지 못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사진을 공공누리 라이선스 적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사진의 활용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사진작가에게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또는 저작권 양도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군청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입니다. 공공누리 적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공누리 적용은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공공누리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서 배포중인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를 군청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국민에게 제공이 가능한 저작물 공공누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설치하면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마크를 선택할 수 있어 공공누리 적용이 용이해 집니다. 다만, 게시물의 저작권 확보 유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 문의(☎1670-0052)하여 홈페이지 권리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 우리기관에서 공개서비스를 하면서 상업적 이용허락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판례에 따르면⁴³ 직접적인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리 활동, 예를 들어 기관 홍보를 위해 무료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 등도 영리적 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용의 영리성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주종관계 등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Q 공공저작물중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시 초상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 공적 인물의 경우 초상 이용에 대한 수인 한도가 일반인보다 크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인물의 가족 사진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판례⁴⁴는 이미 대중에 많은 부분이 노출된 공적 인물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수인 가능성을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가족들 또한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초상권 또는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G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 하면서 자신들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홍보하거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라기 보다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44 “정치인이나 배우, 가수 기타 예능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및 직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진, 성명 등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사용방법,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유명인으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 또는 저하시키는 경우 기타 본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욕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1나30680 판결)

05

제5장 사후관리

제5장 사후관리

제1절 문서의 관리

-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 이용과 자신의 저작물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문서의 관리는 만일 법규를 위반하였을 시 당국에 대하여 근거자료로서 제출하거나 법적인 책임 부담과 관련하여 증거 자료로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문서로서 관리되는 자료들은 저작권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양벌규정에서 주의의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되어 기관의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보유한 문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버전과 라이선스 기관, 수량 등 관리의 이슈가 타 저작물에 비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인해 경찰 등이 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으니,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관에서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을 활용한다면, 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관에서는 소프트웨어만 관리하면 될까요? 소프트웨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기관이 어떤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은 적절치 않고, 대신 「공공저작물 관리 가이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과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당부서		관리담당자	관리책임자
작성일자		(인)	(인)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①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저작자	시리얼 번호 ③	도입 시 버전 ④	이용 가능 버전 ⑤	라이선스 유형 ⑥	도입 일자	보유 수량	설치 수량 ⑦	라이선스 기간 ⑧	폐기 일자 ⑨	운영 부서

- ①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
- ②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
- ③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 ④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세부적으로 명기
- ⑤ 업그레이드 및 패치등을 한 경우 실제이용 가능한 버전(하위버전 이용가능 여부)
- ⑥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 형태표시
- ⑦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
- ⑧ 영구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는 만료날짜를 명기
- ⑨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서식

·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작성 서식					기관명			부서명		성명			
관리 번호	담당자	유형	계약 (작성) 연도	저작물명	저작권 관리 정보				원저작자 정보		공공누리 (CCL) 적용유형	비고	
					저작권 보유	양도	이용 허락 특점	비특점	미확보	성명			주소
001	홍OO	보고서	2014	송례문 복원공사 원료 보고서		○						제3유형	
		도면			○							제2유형	
		인화사진		○								제1유형	
002	김OO	보고서	2015	금정산성 원료보고서					○			미부착	

※ 비고란은 그 외 저작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참고 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일/등록일, 기타 계약 사항(계약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작성 가이드

- “소프트웨어 고유번호”는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록된 고유관리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자산으로 등록 시의 고유번호로 소프트웨어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기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및 버전은 자산관리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 장부류에 등재된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말하는데, 각 소프트웨어는 그 버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시스템 등에 등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구체적 버전까지 명기해야 합니다.
- “저작사”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사를 말하며, “시리얼넘버”는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키(key)값으로 소프트웨어 최초 구입 시 저작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고유번호, 즉 설치 원본 또는 라이선스에 기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도입시 버전”이란 최초 구입당시의 버전을 말하는데, 출시 시기, 패키지 구성 식별을 모두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 버전이란 무상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을 한 경우 실제 이용 가능한 상위버전이나 또는 하위버전 사용 가능 여부를 말합니다. ‘라이선스 유형’이란 볼륨, 패키지, 증서, 다운로드 등 라이선스의 형태를 표시하는 것이며, 도입일자와 보유 수량은 언제 몇 개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는지 적시하는 것입니다.
- “설치 수량”이란 보유한 수량과는 별도로 실제로 설치되어 이용 중인 수량을 말하는 것인데, 영구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간에 날짜를 명기하도록 합니다. 또한, ‘서비스 기간’은 영구 보유 또는 라이선스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만료 날짜를 명기하도록 하고, 이는 업그레이드 가능 기간(또는 업데이트 등의 기술지원) 기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폐기 일자”는 패키지 및 라이선스의 이용권리가 상실된 경우, 즉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라이선스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짜를 명기하도록 합니다.

2.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 관리 작성 가이드

-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저작재산권 관리 목록은 기관에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즉 업무상 저작물에 한하여 작성됩니다.
- 저작재산권 “관리번호”는 단순히 일련번호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관련 문서 번호, 고유 번호 등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를 어떻게 기입하는지는 각 기관에서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정책 상 ‘기안자’를 담당자로 볼 것인지, ‘전결권자 또는 책임자’를 담당자로 볼 것인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와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아닌 담당 부서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유형”은 저작물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쪼개어 유형을 적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라 한다면, 보고서 내의 그림 등 디자인을 내부 제작한 디자인과 외부 제작한 디자인으로 나누고, 보고서의 내용 역시 내부에서 작성한 부분과 외부에서 작성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기 관리할 수도 있고, ‘보고서’ 단위로 유형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향후 이용과 관리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작성)연도”는 저작권이 기관으로 귀속되는 연도를 표기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됩니다. 물론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은 결재의 날짜 등으로 명백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주로 제작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언제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이 기관으로 양도되었는지 연도를 적시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명”은 앞서 작성한 유형에 근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형을 세분화하였다면, 그에 맞춰 구분이 명확하도록 저작물명을 기입해야 하고, 예시와 같이 보고서, 도면과 같은 형태로 유형을 분류하였다면, 그에 적절하게 저작물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 “저작권 관리 정보”는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양도받은 것인지, 이용허락을 받은 것인지, 확보하지 못하였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 만약 이용허락을 받은 것이라면 이것이 독점적인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 정보는 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관리하여 이를 벗어난 이용을 제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이용하여 다른 보고서를 만들고자 할 때, 만약 저작권을 미확보하였다면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 단순 이용허락의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면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는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의 권리로서 원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변형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원저작자 정보”를 관리하여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누리 적용유형을,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CCL 적용 유형을 기재합니다. 이는 저작권 관리 정보와 더불어, 기관 내부의 권리 범위 이상의 이용을 막고, 외부에서 어느 범위로 이용하게 할지 안내함으로써 저작물의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고”란에는 비고란은 그 외 기관에서 저작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참고 사항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표일/등록일, 기타 계약 사항(계약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절 교육

- 사후 관리에서 ‘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은 기관의 저작권 보호와 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게 할 뿐 아니라 환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지만, 기관의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 교육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작권의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OK 교육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OK 지정사와 예비지정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공정 사용 및 침해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OK 교육 강좌는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과 저작권의 침해 예방, 그리고 침해 대응’에 초점을 맞춰 교육 대상에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저작권OK 지정사와 관련 분야 종사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OK 교육 강좌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 강좌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관련된 교육이나 기관 특성에 적합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에 요청 주시면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 류	주 제
기본 교육	사례를 통해 배우는 저작권 개념 및 침해 예방 교육
	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바른 자세(일반) - 저작권 침해·보호현황 소개, 등록 및 이용허락 표시 제도 안내 등
	저작권 침해없이 저작물 바르게 사용하기(이용 허락 등)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안 - 사후 대응 : 복제전송 중단 요청, 불법복제물 신고 등
교육 대상에 특화된 교육	방송제작자를 위한 저작권 이용 및 관리 교육
	인터넷 뉴스 사업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 교육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교육
	교육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보호 교육
저작물 이용 교육	1인 창작자 대상 저작권 이용, 보호 교육
	폰트 저작권 이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 기관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교육 및 컨설팅

[표 9] 저작권OK 교육 프로그램 예시

2.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 강좌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는 저작권아카데미, 원격교육연수원, 원격 평생교육원이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저작권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있습니다.
- 이 중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으로, 기업 및 단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저작권 교육 과정이며 매년 교육 일정은 변경됩니다.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academy/offline-education/introduction/index.do>

- 이 밖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academy/online-education/main.do>



저작권OK 열린상담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킵니다!

“저작권OK 열린상담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저작권 공정이용 및 침해예방을 위한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상담
(전 화) 1588-0190
(홈페이지) www.kcopa.or.kr

대면상담
보호원 4층 열린상담실

부록

저작권법 및 시행령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실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상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경우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성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암호화된 방송 신호"란 방송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유선 및 위성 통신의 방법)에 의한 방송에 한한다)을 수신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저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7. "편저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저작물"은 편저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8. "편저작물"은 편저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저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저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간축물의 경우에는 그 간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간축물의 경우에는 그 간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방"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3. "배방"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유통"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4. "유통"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관리권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점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6. "저작권관리권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점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점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점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등"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작품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36. "영화상영관등"이란 영화상영관, 시사화장, 그 밖에 공중에게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장소로서 상영자에 의하여 임의에 통제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5조(저작자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집·각색·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로서 보호된다. ②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①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관리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표준체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리관리정보의 제가·변경 등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6. 30.〉	제2장 저작권
제5조(저작자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로서 보호된다. ②2차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절 저작물
제6조(편저작물) ①편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로서 보호된다. ②편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결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11. 6. 30.>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이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 4. 22.>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4. 22.>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할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종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저작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1. 12. 2.>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경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용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기하여진 재판이 있을 때에 그 재판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용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 4. 22., 2016. 3. 22.>	

138

지식권법	지식권법 시행령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인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사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인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7. 31.)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계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연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2.)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2.)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물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물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4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 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열곡을 음료전반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물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4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물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4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기록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연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항 법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유도하원, 유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동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4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별표개정 2016. 9. 21.]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관등의 정본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관등의 정본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관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관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목적)해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교서관·대학교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보유·관리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저작권법 시행령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형식 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형식 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5조의2(저작물의 이용과장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형하고 효율적인 정보차관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11조의3부터 제11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6조(변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2013. 12. 30.> ② 제23조 · 제24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32조 ·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2013. 7. 16.>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작품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 · 제25조 · 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의2(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 6. 30.>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불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하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6.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불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임무상시저작물의 보호기간) 임무상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 6. 30.>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 6. 30.>	
제43조(계속작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 · 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 · 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개정 2011. 6. 30.>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행사 · 소멸)	
제45조의2(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 4. 22.>	

지작권법	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지작물의 이용·허락) ①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권의 행사 등) ①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권은 그 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지작물 의 이용에 따라 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제6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양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② 집권의 목적으로 된 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산설 2009. 4. 22.) [제목개정 2009. 4. 22.]	
제48조(공동지작물의 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지작물의 지작재산권은 그 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집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지작재산 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자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 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지작물의 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지작물의 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지작재산권의 소멸) 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지작재산권자 불명인 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지 작물(여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0. 1. 27., 2012. 4. 12., 2015. 7. 13., 2016. 9. 21.)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 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나.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한다) 2)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나.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라 한다) 4. 국내외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8항(법 제31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 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 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산설 2012. 4. 12., 2015. 7. 13.)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 을 것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선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이익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발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20조(건의제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1. 법 제50조에 따른 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 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발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며, 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익을 제기하려는 지작재산권자는 이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 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가 성립되는 때까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0조(의견제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 · 아호 · 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 · 아호 · 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2., 2015. 7. 13.>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居所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작자로 실명인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 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4. 22.)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에 한해(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작자저작물의 경우 필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때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54조(관리변동 등의 등록·호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출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사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②저작권등록부의 사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②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29조(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개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관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관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개정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 7. 22.) [제록개정 2009. 7. 22.]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개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 7. 22.)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한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관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를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제록개정 2009. 7. 22.]

지작권법	지작권법 시행령
제155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 2. 29.>	제6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1.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일원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춘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67조(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제7절 배타적발행권 <개정 2011. 12. 2.>	
제1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11. 12. 2.>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1. 12. 2.>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8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간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12.>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시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시 및 저작재산권자의 경인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목개정 2012. 4. 12.]
제158조(배타적발행권의 의무) ①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 ②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89조(저작재산권자의 표시)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시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간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2. 3., 2010. 1. 27., 2012. 4. 12.>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시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시 및 저작재산권자의 경인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목개정 2012. 4. 12.]
제1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진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진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8조의2로 이동(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90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11. 12. 2.> ②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 존속기간 중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진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진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8조의2로 이동(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자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자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2. 2.>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2011. 12. 2.>] [제62조개정 2011. 12. 2.]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고) ①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타적발행권자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②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배타적발행권자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자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배타적발행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2. 2.>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자는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발행등을 중지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2011. 12. 2.>] [제62조개정 2011. 12. 2.]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6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2011. 12. 2.>]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 제36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1조로 이동<2011. 12. 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신설 2011. 12. 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2011. 12. 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종전 제63조는 제62조로 이동<2011. 12. 2.>]
제63조의2(중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63조의2(중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1. 12. 2.>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낸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든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2. 2.>	제64조(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개정 2011. 12. 2.>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낸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당해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약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음반 및 방송이라든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시행령
제64조의2(실업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업·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업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업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업·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업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업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업자는 그의 실업 또는 실업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업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업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업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름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업자는 그의 실업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업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실업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업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업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업자는 그의 실업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업자는 그의 실업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업의 복제물이 실업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업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업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 3. 22.>	
제72조(공연권) 실업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업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업이 방송되는 실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업자는 그의 실업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업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업자는 그의 실업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업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업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업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2.>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제69조(양전)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분쟁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76조(디지털음성방송사업자의 실업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방송사업자가 실업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합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8. 2. 29.>	제93조(실업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업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업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업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2.>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6. 3. 22.]	
제77조(공동실업자) ①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실업자의 권리(실업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업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통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업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 3. 22.>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2.>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제183조(디지털음성방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방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83조(디지털음성방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방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6. 3. 22.]
	제183조의2(상연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연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 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 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2.>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3. 25.] [제목개정 2016. 3. 22.]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6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5절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 저작권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권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방송 의 경우에는 5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 12. 2.>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 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할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160	
	제6절 저작권접권의 제한ㆍ영도ㆍ행사 등
	제87조(저작권접권의 제한) ① 저작권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 제26조부터 제22조까지, 제34조, 제35조제2, 제35조제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2.> ② 디지털음성방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 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 4. 22.>
	제88조(저작권접권의 영도ㆍ행사 등) 저작권접권의 영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 여는 제46조를, 저작권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권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 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범정하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ㆍ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저작권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권접권 또는 저작권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권인접권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 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통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 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복제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2〉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복제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5조(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재물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할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관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재물에 관하여는 제20조 단서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을,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할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관리행사에 관하여는 제48조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데이터베이스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	[전문개정 2011. 12. 2.]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①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성명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2. 공개성명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부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부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성명·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성명·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제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5장제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101조제2(번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제2(번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본조신설 2009. 4. 22.]	[본조신설 2009. 4. 22.]
제101조제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제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신규학교 인학을 위한 학령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신규학교 인학을 위한 학령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관행에 의하여 프로그램들 이용되는 자기 해당 프로그램들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관행에 의하여 프로그램들 이용되는 자기 해당 프로그램들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신설 2011. 12. 2〉	②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신설 2011. 12. 2〉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2〉
[본조신설 2009. 4. 22.]	[본조신설 2009. 4. 22.]

지식권법 시행령	지식권법
제101조의4(프로그래밍도역분사)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도역분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도역분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도역분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지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22.]	제101조의4(프로그래밍도역분사)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도역분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도역분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도역분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지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22.]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01조의6(프로그램의 임차)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차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01조의6(프로그램의 임차)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차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개정 2011. 6. 30., 2011. 12. 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들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들이나 그 수식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들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들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들을 자동적·중개적·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들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들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들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들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들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자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들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들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병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들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들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들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 리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1. 6. 30.>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개정 2011. 6. 30., 2011. 12. 2.)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들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들이나 그 수식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라. 저작물들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병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들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들을 자동적·중개적·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들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공되는 저작물들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들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라. 저작물들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들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자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저작물들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들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병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들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들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들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들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들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나. 제3호나목부터 리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들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30.>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1. 6. 30.>

저작권법

제103조(복제· 전송의 중단 요청)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 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 사실 및 재개정임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2.>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6. 30., 2011. 12. 2.>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통보·복제·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30.>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복제· 전송의 중단 요청)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게 복제·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사관리업자에게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개정 2008. 2. 29., 2011. 6. 30., 2011. 12. 2.>

-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생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권리주장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배상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1. 12. 2.>

제41조(복제· 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 전송자(복제· 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복제· 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6. 30.>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42조(복제· 전송의 재개 요청) ①법 제103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 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 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12. 2.>

-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생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지로부터 적법하게 복제· 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그 저작물등의 자체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복제· 전송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1항에 따른 재개요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신설 2011. 12. 2.>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

제103조제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특정 장치의 해지
- 특정 해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할리적 조치
-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불법복제물의 삭제
-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특정 장치의 해지
-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본조신설 2011. 12. 2.]

제103조제2(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손해가 및 행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 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 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제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공자에게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 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제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 성명
- 주소
-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11. 12. 2.]

제44조의2(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법 제103조제3제1항에 따라 해당 복제· 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출 것을 청구하려는 권리주장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청구서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취지
- 해당 복제· 전송자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유형 및 그 침해 사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사실

[본조신설 2011. 12. 2.]

제44조제94(정보 제공의 절차) ① 법 제122조제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제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 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아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 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등 상호 간에 컴퓨터를 상호 2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4.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관리권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아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8. 7. 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정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2조(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104조(2)(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유보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교육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를 분석을 하는 경우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6조(2)(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2)제1항제8호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작물등의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대여,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6. 30.]	
제104조(3)(가)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12. 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여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신하는 행위 ② 제1항은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104조(3)(나)원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제품·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무형의 조치들 제조·조립·반영·수출·수입·판매·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 12. 2.] [중정 제104조(3)의는 제104조의8로 이동(2011. 12. 2.)]	
제104조(3)(다)원호된 원본 또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표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저작물등의 적법한 복제물과 함께 배포되는 문서 또는 표장을 불법복제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된 문서 또는 표장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시행령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복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재산자의 허락 없이 복화기기를 이용하여 복화하거나 공중상연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중전송 신호)를 함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04조의8(침해의 방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방지·예방, 손해배상의 금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변상금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방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12. 2.> [본조신설 2011. 6. 30.] [제104조의4에서 이동<2011. 12. 2.>]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1.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17. 3. 21.> 1. 파생민주권인 또는 파생창작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형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로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금액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또는 금액을 얻어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③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⑧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리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6. 9. 21.>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1.>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면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관하여 권리자, 이용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6. 9. 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1.>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때에는 요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6. 9. 21.>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3. 22.>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가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2.>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3. 22.>	제106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목록 2. 해당 저작물등의 저작권자(권리자 등)과의 신탁계약기간 3. 사용료 등 이용조건 및 표준계약서 제51조의2(통합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합 징수의 업종·주체·대상·기간 및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법 제10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③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합 징수를 하는 자는 징수 주기(마다 징수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 결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총징수액 및 단체별 징수액 2. 단체별 징수액의 세부내역 3. 단체별 징수액의 산출근거(저작물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4.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4항 또는 이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저작권자(권리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조신설 2016. 9. 21.]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제107조(서명명리의 청구) 저작권신탁권리인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신장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7조(서명명리의 청구) 저작권신탁권리인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 신장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1.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영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1.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영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영의 폐쇄를 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11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영의 폐쇄를 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111조(다른 법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물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여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제제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③제1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④제1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2.>	제111조(다른 법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대물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여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제제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6. 3. 22.> ③제1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④제1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3. 22.>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 4. 22>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 4. 22>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3. 22.>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신고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3. 22.>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1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절차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장비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청 10. 식제(2016. 3. 22.)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8. 2. 29, 2009. 4. 22.>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절차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장비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청 10. 식제(2016. 3. 22.)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113조(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기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69조(알선) ① 법 제113조의2에 따라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알선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114조(조정)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고,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115조(비용) 조정절차는 비용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조정자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채택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 7. 22.〉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7. 22.〉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제가 실시되는 경우 강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7. 22.〉
제118조(조정비용 등)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공동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4. 22.〉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09. 4. 22.]	
제119조(강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1항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자의 청제 등에 관한 강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자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강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정을 실시한 때에는 강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나머지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비용의 납부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 7. 22.〉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④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7. 22.〉 ⑤조정부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7. 22.〉 ⑥ 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강제가 실시되는 경우 강정기간은 제5항의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7. 22.〉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개정 2009. 4. 22.〉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4. 22.〉	제64조(강정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강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1. 강정 대상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2. 침해에 관한 강정 요청의 경우에는 관련 저작물들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위원회가 강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위원장은 강정을 하려면 강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2.〉 ③강정전문위원회는 전문적인 강정을 위하여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강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강정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9. 7. 22.〉
제121조 삭제(2009. 4. 22.)	
제122조(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1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120조에 따른 저작권정보센터에는 저작권 정보제공 등을 위한 저작권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보호 및 응물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저작권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작물 권리관리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저작물 및 권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의 개발, 관리 및 보급 3.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4.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 5. 저작권 정보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9. 7. 22.]
제8장(2)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설 2016.3.22〉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①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보호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직무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3(보호원의 임원) ① 보호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원장은 보호원을 대표하고, 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보호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4(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시범집행권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 제133조의2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과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4(업무) 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시범집행권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수사 및 단속 사무 지원 - 제133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 - 제133조의2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과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 법령에 따라 보호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12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제103조의3,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따른 심의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원의 원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호원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 문화산업 및 법률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2.]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또는 보호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67조의2(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재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1.]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9. 21.]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지작권법 시행령	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방지 등 청구) ①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 제31조 · 제75조 · 제76조 · 제76조의2 · 제82조 · 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3. 25.> ②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방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개정 2009. 4. 22.> -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든가 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프로그래밍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지작자의 명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침해로 본다.<개정 2011. 6. 30.> ③ 삭제(2011. 6. 30.)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권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지작재산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지작재산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징한다. ②지작재산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지작재산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작재산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조 및 제96조에 따라 존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권점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징한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178	
	제125조의2(변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지작재산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상(事實上)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감응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인권을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지작재산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존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
	제126조(손해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훼손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에 감응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 · 자 · 부모 · 손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을 말한다)이나 유언장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자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① 법원은 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다른 당사자 나. 다른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다. 다른 당사자의 후견인 - 영입비밀("부장관장관"지 및 영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12. 2.]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 · 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 전송자의 계정 (이메일 주소 변경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2016. 3. 22.>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 ·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 · 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개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개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 이 3회 이상 내려진 개시판으로서 해당 개시판의 형태, 개시되는 복제물의 영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개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공 제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개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복제 · 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개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22.]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 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전문개정 2009. 7. 22.]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 전송중단을 명하러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 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72조의3(여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 1. 해당 복제 · 전송자의 성실성 2. 해당 복제 · 전송자가 복제 · 전송한 양 3. 개시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4. 불법복제물등이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 할 것을 명하러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제 · 전송자의 계정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3. 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2항에 따른 복제 · 전송자의 계정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제2항의 명령서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법 제13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 · 전송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133조의3(시정andro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 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 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2.> ③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 니한다.<개정 2016. 3. 22.> [본조신설 2009. 4. 22.]	제133조의4(개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1.> 1. 해당 개시판의 영리성 2. 해당 개시판의 개설 취지 3. 해당 개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4. 해당 개시판의 이용자 수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6. 개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7. 해당 개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8. 불법복제물등의 개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개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할 것을 명하러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개시판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3. 위반 행위의 내용 4. 정지 기간 ③ 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해당 개시판의 서비스의 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④ 법 제133조의2제5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개시판 정지 사실을 개시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개시판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22.]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법 제133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결과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복제 · 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법 제133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명령 이행 일자 [본조신설 2009. 7. 22.]
---	--	--

지작권법 시행령	지작권법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항) ①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2. 29., 2012. 4. 12.>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촉진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저권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 4. 12.> [제목개정 2009. 7. 22.]	제134조(언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 4. 22.> ③ 삭제(2009. 4. 22.) [제목개정 2009. 4. 22.]
제75조(기증 절차) ① 법제13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기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서와 양도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라 기증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증저작물 등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적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③ 제2항의 규정제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 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1.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7. 2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⑥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2. 29.>	제11장 발치
제136조(별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을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권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임의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임의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 6. 30.) 6. 삭제(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제137조(별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3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11. 12. 2.> [제목개정 2011. 12. 2.]
제138조(별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1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3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3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3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관리종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제138조(별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1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3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3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3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관리종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제139조(물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적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자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개정 2011. 12. 2〉 [전문개정 2011. 6. 30]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2011. 12. 2.)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4. 22〉	
제142조(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4.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4. 22., 2011. 12. 2., 2016. 3. 22〉 1. 제103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6조에 따른 의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12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33조제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33조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 4. 22〉 ④ 삭제(2009. 4. 22.) ⑤ 삭제(2009. 4. 22.)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6. 9. 21]

2019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기업·기관·단체집

발 행 2019년 12월

발 행 인 윤태용

기 획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예방팀

집 필 정성희(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

김신의(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이상준(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정재용(한국저작권보호원 현장조사팀)

감 수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행 처 한국저작권보호원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4 · 9 · 10층

연 락 처 1588-0190

홈페이지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저작권OK www.copyrightok.kr

디자인·인쇄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031-949-0976)
